

淸의 朝鮮使行人選과 ‘大清帝國體制’*

丘凡眞

(서울대 동양사학과)

1. 序論

明·淸과 朝鮮의 약 500년에 걸친 외교 관계는 전통시대 韓-中 관계의 ‘典型’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全海宗 1970-1: 50-54), 보통 ‘중국적 세계 질서’(Chinese World Order) 또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로 이해되는¹⁾ 전통시대 東아시아 국제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朝鮮과 明·淸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특히 조선이 파견한 使行人(‘朝貢’의 측면)에 대해서는 燕行錄 같은 조선 측의 방대한 기록을 분석한 연구가 일일이 열거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다(고구려연구재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KRF-2006-332-A00028). 본고의 심사에 참여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하며, 분량 관계로 본고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적 사항들은 앞으로의 연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1) Fairbank 1968은 이러한 이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주 제 어: 淸의 朝鮮使行人, 칙사의 인선, 旗人 칙사, 조공체제, 淸의 朝鮮 인식
Qing Envoys to Korea, Appointment of Qing Envoys, Bannerman Envoys, Qing Tribute System, Qing Perception of Korea

단 2004: 82-149 참조). 그러나 明·淸이 조선에 파견한 使臣, 즉 勅使(‘冊封’의 측면)에 대한 연구는 결코 활발했다고 할 수 없다. ‘冊封’과 ‘朝貢’이 동일한 역사 현상의 표리를 형성하므로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冊封-朝貢 體制’라 불러야 마땅하다면(김한규 2000: 284), ‘책봉’과 ‘조공’ 가운데 후자에 치중했던 종래의 연구는 조선과 明·淸의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필자는 본고를 통해서 淸이 조선에 파견했던 勅使의 人選 문제를 고찰해 보려 한다. 管見에 한하는 한, 淸의 朝鮮使行人選 문제를 專論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듯하다. 사실 연구 주제의 범위를 淸의 使行 문제 전반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선행 연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연구의 부진은 물론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갖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한 바가 가장 컸을 터이지만, 역설적이게도 淸의 使行에 대한 수준 높은 선행 연구(全海宗 1970-2)를 뛰어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淸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료가 의외로 적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淸의 칙사가 사행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경우는 매우 희소할 뿐만 아니라, 칙사의 활동을 전하는 조선 측의 기록도 접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²⁾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阿克敦이 남긴 조선 방문 기록을 분석하여 18세기 朝-淸 관계의 특징을 규명한 연구(홍성구 2005), 19세기 전반 조선을 방문했던 두 칙사(柏葭과 花沙納)의 기록을 분석한 연구 등이 나온 바 있다(俞春根 1994; 구범진 2004). 또한 중국에서는 朝-淸의 사신 왕래를 다각도에서 해명한 종합적인 연구서가 출간되기도 하였다(劉爲 2002).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의 주제인 淸의 朝鮮使行人選 문제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淸이 조선에 파견

2) 殷夢霞·于浩 選編, □□使朝鮮錄□□에 수록된 朝鮮使行人選 기록만 놓고 보면, 明인이 남긴 것은 9種, 淸인이 남긴 것은 6種이다. 하지만 후자 가운데 4종은 19세기의 使行人選 기록이고, 18세기까지의 기록은 阿克敦의 □□東游集□□과 □□奉使圖□□뿐이다.

했던 칙사들의 관직과 이름이 기록된 □□同文彙考□□ 補編 卷9의 「詔勅錄」을 검토해 보았는데,³⁾ 그 결과 淸이 조선사행의 인선에서 漢人 관료를 배제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하였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⁴⁾ 본고는 「詔勅錄」에 기재된 칙사 명단과 기타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이 가설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삼는다. 만약 필자의 가설이 과연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본고의 고찰 결과는 通時的으로 朝-淸 관계와는 구분되는 朝-淸 관계의 역사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共時的으로 보자면 淸이 주도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朝鮮使行人選의 定例와 實態

□□同文彙考□□의 「詔勅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⁵⁾ 入關 이후 光緒 7년까지

-
- 3) 본고에서는 1978년 國史編纂委員會가 韓國史料叢書의 일부로 영인·간행한 □□同文彙考□□를 이용하였다.
- 4) 본고에서 말하는 ‘漢人’은 淸代 民籍에 등재되었던 ‘民人’을 가리킨다. 반면에 八旗의 호적인 旗籍에 등재되었던 자는 ‘旗人’이라 부를 것이다. 또한 ‘旗人’은 보통 ‘滿洲(人)’로 통칭되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도 양자를 혼용할 것이다. 八旗와 ‘旗人’, 그리고 ‘旗人’과 ‘滿洲’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Rawski 1998; Rhoads 2000; Elliot 2001; Crossley 2002; Elliot 2006 등을 참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旗人 가운데 八旗 漢軍에 속하는 자들은 설사 혈통적으로 漢人이었다고 하더라도 民人이 아닌 旗人이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淸의 중국 정복은 물론이거니와 17세기 초·중반의 朝-淸 관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던 洪承疇 같은 ‘貳臣’들은(한명기 2005), 혈통적으로는 漢人이었으나 대개 八旗 漢軍 등에 편입된 旗人이었다. 이들은 淸의 入關 이후에도 여전히 旗籍에 속하는 旗人으로서 일반 漢人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존재였다.
- 5) 「詔勅錄」은 엄밀히 말하자면 별개의 使行일지라도 동시에 입국한 경우라면 하나의 使行으로 취급하여 기록하였다. 예컨대 <표 1>의 ‘S06-1’은 仁祖에 대한 諭祭使行과 孝宗에 대한 冊封使行을 함께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詔勅錄」을 기준으로 할

4 인문논총 제59집 (2008)

지 淸이 조선에 파견한 사행은 모두 150회(연인원 349명)였다.⁶⁾ 그런데 이 150회의 조선사행 전체에 대하여 모종의 인선 원칙이 존재하였는지, 또 존재하였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명시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冊封使行에 한해서 보자면 乾隆 이후의 會典에서 인선의 원칙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乾隆 〇〇欽定大清會典〇〇(乾隆 29년 완성)을 보면,

朝鮮國王은 王妃와 王을 함께 책봉한다. 아들이 장성하면 世子로 책봉해 줄 것을 請한다. 모두 三品 이상의 관원이 正使와 副使로 充任된다.⁷⁾

고 하였으니, 늦어도 乾隆 중기에는 3品 이상의 고급 관원을 조선에 책봉사로 파견한다는 인선 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乾隆 〇〇欽定大清會典則例〇〇는,

(A) 順治 16년에 칙사를 보내어 詔勅을 갖고 가서 朝鮮國 世子 李柵을 朝鮮國王으로 冊封하였다. 이 해에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朝鮮國王을 冊封하러 갈 때에는, 內大臣, 散秩大臣, 一等侍衛, 滿洲 內閣學士, 翰林院掌院學士, 禮部侍郎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올린 뒤] 삼가 황제께서 正使와 副使 각 한 사람씩 낙점하시기를 기다린다.⁸⁾

경우 사행의 파견 횟수는 실제보다 적게 된다.

6) 「詔勅錄」에 따르면, 淸의 조선에 대한 칙사 파견은, 順治 연간에 39회, 康熙 연간에 54회, 雍正 연간에 14회, 乾隆 연간에 18회, 嘉慶 연간에 8회, 道光 연간에 10회, 咸豐 연간에 3회, 同治 연간에 2회, 光緒 연간에 4회 등 도합 152회였다(〇〇同文彙考〇〇 補編 卷9 「詔勅錄」, 4b-49b쪽). 그러나 본고의 관심사는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에 있으므로, 淸의 모든 관원이 旗人이었던 입관 전의 칙사 파견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順治 元年이지만 입관 전에 있었던 2회의 칙사 파견은 논외로 처리하였다.

7) 乾隆 〇〇欽定大清會典〇〇 卷56, 2a쪽.

8) 乾隆 〇〇欽定大清會典則例〇〇 卷93, 3a쪽.

고 하여, 앞의 인용문에 보이는 “三品 이상의 관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順治 16년에 淸은 顯宗을 책봉하는 칙사를 조선에 파견하였고, 같은 해에 “內大臣, 散秩大臣, 一等侍衛, 滿洲 內閣學士, 翰林院掌院學士, 禮部侍郎” 중에서 정사와 부사를 한 명씩 고른다는 인선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열거된 여섯 관직 중에서 內大臣(종1품), 散秩大臣(종2품), 一等侍衛(정3품) 등은 侍衛處 소속의 八旗 武職이었으므로,⁹⁾ 이들 관직에 재직 중인 자로서 책봉사로 파견되는 관원은 모두 旗人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滿洲 內閣學士” 이하는 “滿洲”가 “內閣學士”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세 관직 모두를 수식하는지가 분명치 않지만, 嘉慶 □□大清會典□□(嘉慶 23년 완성)의 다음 기사를 보면 “滿洲”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B) 무릇 冊封使는 모두 [황제의] 特簡을 받든다. 朝鮮[으로 가는] 正使는 內大臣, 散秩大臣, 一等侍衛의 관직과 이름의 명단을 작성하고, 副使는 內閣의 滿洲 學士, 翰林院의 滿洲 掌院學士, 禮部의 滿洲 侍郎의 관직과 이름의 명단을 작성하여 황제께 파견하실 것을 奏請한다.¹⁰⁾

여기서 “滿洲”는 “內閣學士, 翰林院掌院學士, 禮部侍郎”의 세 관직을 모두 수식하고 있다. 종2품의 문관으로서 禮部侍郎의 직함을 겸하는 內閣學士의 정원은 모두 10인으로, 그 가운데 滿洲가 6인, 漢人이 4인이었다.¹¹⁾ 따라서 (B)의 “內閣滿洲學士”란 10인의 內閣學士 중에서 滿洲 6인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종2품의 문관인 翰林院掌院學士의 정원도 전체 2인에 滿洲가 1인, 漢人이 1인이었으므로,¹²⁾ (B)의 “翰林院滿洲掌院學士”는 “內閣滿洲學士”의 경우와 같은 의미가 된다. 한편 정2품의 문관인 禮部侍郎은 滿·漢이 同數로서 滿洲가 2인, 漢人이 2인이었으므로,¹³⁾ “禮部滿洲侍郎”

9) □□淸史稿□□ 卷117, 3364쪽.

10) 嘉慶 □□欽定大清會典□□ 卷31, 13b쪽.

11) □□淸史稿□□ 卷114, 3267쪽.

12) □□淸史稿□□ 卷115, 3309쪽.

이란 4인의 禮部侍郎 가운데 滿洲 2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조선에 파견하는 책봉사의 인선 대상을 고급의 滿洲(=旗人) 관원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漢人 출신의 관원이 조선에 파견되는 책봉사 인선에서 배제되었다는 뜻이므로, 서론에서 언급한 필자의 가설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와 (B)의 내용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A)와 (B)는 책봉사행의 인선에만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책봉사행 인선에서조차 (A), (B)의 원칙이 그대로 준수되었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¹⁴⁾

그렇다면 (A)와 (B)의 인선 원칙은 실제의 인선에서 얼마나 준수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책봉사행 이외의 인선에 대한 사료의 ‘침묵’을 곧바로 칙사 일반의 인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칙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실제로 파견된 책봉사의 인선이 과연 정례를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였는지는 역대의 칙사 중에서 책봉사만을 가려서 그 정사와 부사의 출신을 확인하면 될 터이지만, 본고에서는 책봉사뿐만 아니라 「詔勅錄」에 기록된 칙사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旗人 출신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부록의 <표 1>~<표 11>은 입관 이후 150회에 걸쳐 파견된 칙사의

13) □□清史稿□□ 卷114, 3279쪽.

14) (A)와 (B) 자체에 대해서도 그 내용상의 차이(정사와 부사 인선의 구분 여부) 및 각각의 성립 시점 등에 대해서 더 깊이 천착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예컨대 (A)의 인선 원칙이 順治 16년에 수립되었다는 會典의 기사는 그대로 따르기 곤란하다. 실제 順治 16년의 책봉사 인선이 (A)의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여유는 없기 때문에, 필자가 여러 관련 사료를 검토한 도달한 결론만을 언급해 두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왕 책봉사의 인선은 肅宗의 책봉을 위한 康熙 14년의 인선을 계기로 (A)의 정례로 발전한 듯하다. 한편 정사와 부사의 인선을 구분하는 (B)의 정례는 乾隆 會典의 편찬 이후에 성립된 듯하며, (B)와 동일한 내용의 정례가 인용된 □□同文彙考□□의 기록(原奏, □□同文彙考□□原編 卷4, 6a)을 통해서 그 하한선을 乾隆 41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직과 이름을 『詔勅錄』의 기재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를 판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단에 수록된 칙사의 이름과 淸 쪽의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旗人 출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확인 작업을 위하여 본고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는 □□清代職官年表□□(이하 □□職官年表□□)이다(錢實甫, 1980). 이 작업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존재하긴 하지만¹⁵⁾ □□同文彙考□□의 『詔勅錄』 이외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칙사의 관직 및 이름을 알려주는 기록이나 淸의 實錄과 같은 관련 기록을 면밀히 대조하고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칙사에 대해서 적어도 기인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¹⁶⁾ 먼저 <표 1>~<표 11>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를 판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① 『詔勅錄』에 수록된 칙사의 관직이 漢人 관료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던 관직(“滿缺”)인 경우-예컨대 內大臣, 散秩大臣, 一等侍衛 등과 같은 八旗 武職-에는 칙사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가 旗人이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표에서 ‘관직’ 오른쪽의 ‘판정’에 “a”를 기입하였다. 한편, 『詔勅錄』에 기재된 관직을 보면 만주어 관명을 한자로 轉寫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

15) <표 1>의 ‘S02-3’처럼 『詔勅錄』에 이름의 첫 글자만 기재된 경우는 그 신원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더구나 해당 인물이 □□職官年表□□의 등재 대상이 아닌 하급 관원인 경우라면 확인 작업은 매우 곤란해진다. 또한 ‘S01-3’의 경우처럼 실사 이름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직이 □□職官年表□□의 수록 대상이 아니라면 신원 추적이 어렵게 된다. 더욱이 『詔勅錄』에 수록된 관직과 이름을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보면 한자 표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오류인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16) 『詔勅錄』에 기재된 칙사의 관직과 이름을 □□同文彙考□□에 수록된 기타 문서나 淸의 實錄 사료 등에 기재된 것과 대조해 보면 적잖은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대개 만주어를 한자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본고에서는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작업에만 집중하고 이런 차이는 논외로 하였다.

칙사를 旗人으로 간주하고 ‘판정’에 “a-”를 기입하였다. 그리고 표에서 “a”와 “a-”로 판정한 경우는 표 아래(“※” 부분)에 그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② 『詔勅錄』의 관직이 滿·漢 모두에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職官年表□□의 수록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먼저 『詔勅錄』의 이름을 □□職官年表□□의 해당 연도 해당 관직에 재임 중인 자의 이름과 대조해 보았다. □□職官年表□□는 滿·漢을 병용하는 관직에 대하여 “滿洲”와 “漢人”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관직의 “滿洲” 부분에서 칙사의 이름이 확인된다면 그 칙사는 旗人이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표의 ‘판정’에 “b”를 기입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밝히기 위하여, <표 1>~<표 8>의 경우에는 “b1”, “b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표의 아래에 해당 이름이 확인되는 □□職官年表□□의 쪽수를 명시하였다. 예컨대 “職246”은 “□□職官年表□□, 246쪽”을 의미한다. <표 9>와 <표 10>의 경우는 표의 ‘판정’ 부분에 해당 이름이 확인되는 □□職官年表□□의 쪽수를 밝혀 두었다. 예컨대 “b-1012”는 □□職官年表□□의 1012쪽에서 해당 이름이 확인된다는 의미이다.

③ 『詔勅錄』의 관직이 □□職官年表□□의 수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①과 ②의 방법으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詔勅錄』의 기록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詔勅錄』에 이름의 첫 글자만 표기된 경우, □□職官年表□□에서 『詔勅錄』의 이름 첫 글자와 일치하는 자가 해당 연도 해당 관직의 “滿洲” 명단에서 확인된다면 그를 旗人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표의 ‘판정’에 “c”를 기입하고, 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의 하단에 근거를 밝혀 두었다.

④ 칙사의 관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이름만으로도 旗人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즉 『詔勅錄』의 이름에 “宗室”이나 “覺羅”가 포함된 경우는 淸 皇室의 同族이므로 칙사가 旗人이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표에서 이름 오른쪽의 ‘판정’에 “d”를 기입하였다.¹⁷⁾

- ⑤ “a”~“d”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칙사가 旗人이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표에서 이름 오른쪽의 ‘관정’에 “e”를 기입하였고, ②와 ③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표의 하단에 그 근거를 밝혔다.
- ⑥ “a”~“e”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칙사는 표에서 이름 오른쪽의 ‘관정’에 “x”를 기입하고, 표의 하단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 ⑦ <표 1>~<표 10>에는 정사와 부사만이 등재되었는데, 康熙 초기까지는 三使 이하의 칙사가 파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표 11>에 이들의 관직과 이름을 열거하고, 표 아래에서 이들의 旗人 출신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입관 이후 淸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칙사들은 ①~⑤의 방법을 통해서 旗人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칙사가 旗人 출신이었다고 단정해 버리긴 곤란하다 할 수 있는 ⑥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 1>에 4명, <표 2>에 5명, <표 3>에 2명, <표 4>에 4명, <표 5>에 2명, <표 7>에 1명, <표 11>에 5명 등, 모두 합해서 23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그 이름만 보아도 漢人이 아니었음이 거의 확실하며, 출신이 불확실한 경우는 <표 1>의 “x4”, <표 2>의 “x1”, <표 3>의 “x2”, <표 4>의 “x2”와 “x4”, <표 5>의 “x1”, <표 11>의 “方”과 “柯” 등 기껏해야 8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본고에서 검토한 칙사의 2.3%에 불과한 숫자이다.

사실 이 8명도 그 이름의 첫 글자가 반드시 漢人 관료의 姓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칙사를 제외하고 淸이 조선에 파견했던 유일한 정식 관원이었던 通官 역시 漢人 출신이 배제되는 “滿缺”이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한다면,¹⁷⁾ 이 8명 역시 旗人 출신으로 보아도 잘못은 아닐 듯하다. 그렇

17) “宗室”과 “覺羅”에 대해서는, Rawski 1998: 72-75 참조.

다면 淸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는 사실상 100% 旗人으로 구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듯하다.

지금까지 입관 이후 淸이 파견한 모든 칙사의 인선 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책봉사 인선에 관한 정례의 漢人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모든 칙사의 인선에 적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선 대상이 되는 관직에 관한 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표 1>~<표 10>의 ‘정례’에 표기된 “A”, “B”, “X” 등에 주목해 보자. 이들은 책봉사를 포함한 모든 칙사의 관직과 (A), (B)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A”는 (A)와, “B”는 (B)와 일치하는 경우를, “X”는 정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표 1>~<표 3>에서는 칙사의 관직이 (A), (B)와 일치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4>에서는 “A”가 4건 나타났고, <표 5>에서는 “A”가 5건 보이는 한편, ‘K23-1’의 사례에서 “B”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표 6>에서는 “A”가 6건, “B”가 3건으로 늘어났다. 옹정 연간의 칙사 인선을 보여주는 <표 7>에서는 “A”(4건) 및 “B”(3건)의 빈도가 처음으로

18) 淸이 조선에 파견하던 通官, 곧 朝鮮通官은 禮部 會同四譯館 소속의 관직이었다. 乾隆 23년 朝鮮通官의 정원 조정과 관련된 實錄 기사를 보면, “朝鮮通官은 康熙 13년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정한 바 있습니다. [즉,] 上三旗에서 6品 3員, 7品 2員, 8品 1員, 下五旗에서 6品 3員, 7品 2員, 8品 1員 등이었습니다. 上三旗는 內務府에서 帶領하여 引見하였고, 下五旗는 年貢을 따져서 승진시켰습니다.”(□□淸實錄 高宗純皇帝實錄□□ 卷560, 乾隆 23年 4月 戊辰, 103-104쪽. 이하 □□淸實錄□□은 “연호+실록”의 방식, 즉 □□乾隆實錄□□ 등으로 약칭)라고 하여, 朝鮮通官을 八旗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同文彙考□□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通官의 이름은 漢人의 성명과 거리가 멀다. 몇몇 사례만 예로 들자면, ‘Q49-1’의 사행에서는 “六品通官 烏林布寶樹, 七品通官 四格伍什泰, 無品級通事 太平保” 등이(「盛京禮部知會通官派送咨」, □□同文彙考□□ 原編 卷4, 26a쪽), ‘J05-1’의 사행에서는 “一等六品通官 倭克精額太平保, 二等七品通官 雙林, 三等八品通官 常山, 無品級通事 吉爾通阿” 등이(「禮部知會勅使起身咨」, □□同文彙考□□ 原編續 封典一, 13a-13b쪽), ‘J08-1’의 사행에서는 “六品通官 倭克經額, 七品通官 雙林, 八品通官 景平繼文寶德” 등이 기록에 보인다(「禮部知會派遣通官咨」, □□同文彙考□□ 原編續 封典一, 21a쪽).

50%에 도달하고 있으며, <표 8>에서는 단 두 건(‘Q49-1’과 ‘Q51-1’)을 제외한 모든 인선이 “A”(6건) 또는 “B”(10건)에 해당하였다. <표 9>에서 嘉慶 연간의 칙사 인선만을 보면 8건 모두가 “B”에 해당하고 있다. 이렇듯 칙사의 관직이 (A), (B)와 일치하는 경우는 康熙 연간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었으나, 雍正 연간에는 50%가 일치하였고, 乾隆 연간에 이르러서는 전체 18건 가운데 16건이 일치하였다. 그리고 嘉慶 연간에는 모든 칙사의 인선이 (B)와 일치하였다.

嘉慶 연간까지의 칙사 인선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먼저 칙사 파견의 성격 변화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후술하듯이 초기에는 양국간에 발생한 외교 실무를 해결하기 위한 칙사 파견이 많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관품이 낮은 하급 관원이 칙사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淸의 조선에 대한 칙사 파견은 책봉을 비롯한 의례적인 성격의 사행에 국한되었다.

다음으로 칙사 파견의 성격이 변화하는 가운데 책봉사 인선에 관한 정례가 모든 칙사의 인선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광서 7년의 칙사 파견과 관련이 있는 □□同文彙考□□의 다음 기록은 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C) 살피건대, 定例를 보면, “遺詔를 朝鮮國에 頒發할 때에는, 마땅히 內大臣, 散秩大臣, 內閣學士, 各部院 侍郎 등의 관직과 이름을 [열거한] 명단을 작성하여 황제께 正使와 副使를 각 1명씩 골라 파견하실 것을 奏請한다. ... ”고 하였습니다.¹⁹⁾

光緒 7년의 칙사는 皇太后의 사망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C)는 당시 칙사의 인선이 정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고 있다. 책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례를 의식한 칙사의 인선이 이루어졌던 것이니, 책봉사 인선의 원칙이 칙사 일반의 인선에 확대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잘 보여 준

19) 「原奏」, □□同文彙考□□ 原編續 陳慰二, 23a쪽.

다고 하겠다.

그런데, (C)에 등장하는 정례가 (B)는 물론이거니와 (A)와도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B)와 비교하자면, 첫째로 정사와 부사의 인선 대상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로 (B)에 열거된 여섯 관직 가운데 內大臣, 散秩大臣, 內閣學士 등의 세 관직만 일치하고 나머지 세 관직은 “各部院侍郎”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內閣學士와 各部院侍郎의 滿·漢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C)보다 시기가 뒤지는 光緒 〇〇欽定大清會典〇〇(光緒 25년 완성)에도 (B)가 정례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적어도 光緒 초년에는 (B)와 다른 정례가 실제의 칙사 인선에 적용되고 있었던 셈인데, 칙사 인선의 정례에 이런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언제일까? 또한 (C)는 칙사 인선의 실태와 얼마나 부합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같은 변화로 인해 그 동안 인선에서 배제되었던 漢人이 칙사로 파견된 적은 없었을까?

이런 문제는 <표 9>와 <표 10>을 비교함으로써 그 해답을 쉽사리 구할 수가 있다. <표 9>를 보면, 道光 연간에 이르러 道光 11년과 道光 13년의 칙사 인선이 (B)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고, <표 10>에서는 道光 24년 이후 光緒 元年의 단 한 차례(G01-2)를 제외하면 (B)와 합치하는 경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표 10>에서 ‘D29-1’과 ‘T03-1’은 국왕(철종과 고종) 책봉사였으며, 왕비 책봉사도 세 차례(D25-1, X02-1, T05-1) 있었다. 〇〇同文彙考〇〇에 수록된 咸豐 2년의 왕비 책봉사 인선 관련 기록에 의하면, (B)로부터의 이탈은 道光 25년 이후 인선 대상 관원 명단에 등재되지 않는 자를 칙사로 고르는 황제의 “特旨”가 거듭되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21) 말하자면 황제가 정례에 중대한 수정을 가했던 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C)가 (B)를 대체하여 칙사 인선의 원칙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던 것도 아닌 듯하다. <표 10>을 보면 (C)에 열거되지 않은

20) 光緒 〇〇欽定大清會典〇〇 卷39, 377쪽.

21) 「原奏」, 〇〇同文彙考〇〇 原編續 封典二, 30b-31a쪽.

관직인 副都統이 여덟 차례나 副使로 파견되었음이 확인된다. (C)와 부합하는 칙사 인선은 ‘D29-1’, ‘T05-1’, ‘G01-1’, ‘G01-2’, ‘G07-1’ 등 다섯 차례에 그쳤을 따름이다.

한편, 道光 24년 이후 정사의 관직을 보면, 侍衛處 소속의 무직 관원 가운데 정사를 선발한다는 (B)와 달리, 13차례의 사행 가운데 12차례의 사행에서 六部, 理藩院, 盛京五部 등의 侍郎이 정사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문직 관원이 부사 인선의 대상이었던 (B)와는 반대로 10차례의 사행에서 무직 관원이 부사로 파견되었다. 따라서 道光 후기부터는 (B)의 무직 정사, 문직 부사 인선과는 정반대의 인선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칙사의 관직에 있어서는 道光 연간부터 乾隆 연간에 확립된 정례가 준수되지 않았고, 급기야는 칙사 인선에 관한 정례가 (C)의 형태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칙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칙사가 旗人 출신의 고급 관원이었으며 漢人은 여전히 칙사 인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琉球·베트남에 파견한 勅使의 人選

지금까지의 고찰 결과를 좀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淸은 조선에 파견하는 칙사를 고급 관원(1품~3품) 가운데에서 선발하였다. ㉡ 淸은 조선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 관료를 배제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서론에서 淸의 조선사행 인선에 관한 필자의 가설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通時的으로 보자면 朝-明 관계와는 구분되는 朝-淸 관계의 역사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漢族 왕조인 明과 달리 淸은 만주족이 세운 왕조였다. 보통 淸의 중국 지배가 明의 典章制度를 대체로 계승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明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의 판도를 확보한 淸이 주도했던 17-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明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몽골, 신강, 티베트 등으로 구성되는 藩部의 성립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淸의 국가 기구 가운데 이 藩部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했던 것은 理藩院이었는데, 이 기구는 漢人 관료에게는 접근이 봉쇄되어 있었다. 반면에 조선을 포함하여 주로 중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明代와 별 다름이 없는 ‘책봉’과 ‘조공’의 원리 위에서 청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담당하던 국가 기구도 明代와 마찬가지로 禮部였다. 때문에 지금까지 학자들은 理藩院과 藩部처럼 淸이 創案한 제도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는 한편, 동시에 조선을 포함한 동남 지역 조공국과 淸의 관계를 明代의 그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인식해 왔다. 明-淸과 朝鮮의 약 500년에 걸친 관계를 ‘조공체제’(tributary system)의 ‘典型’으로 파악하였던 종래의 인식은, 적어도 조선과의 관계에 관한 한 明과 淸의 차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明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명단을 정리한 근년의 연구 성과를 보면, 明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는 거의 대부분이 하급 관원이거나 宦官이었다(高艷林 2004: 193-200). 이는 본고의 고찰을 통해서 드러난 ㉠·㉡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 ㉡는 적어도 칙사 파견에 관한 한 朝-淸 관계에는 朝-明 관계와 엄연히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有明朝鮮國”이라는 표현이나 “崇禎後紀元”의 광범위한 사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조선의 明에 대한 인식과 淸에 대한 그것이 실로 天壤之差를 보이고 있었다면, 淸의 조선 인식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明의 그것과 달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 ㉡는 共時的으로 볼 때에도 淸代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淸代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관련된 종래의 논의는 맨콜(Mancall)의 견해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맨콜에 따르면, 淸의 시각에서 그 주변 세계는 ‘동남 초승달’(the southeastern crescent) 지역과 ‘서북 초승달’(the northwestern crescent)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전자는 정주 농경사회로서 유교와 한자와 같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에, 후자는 유목사회로서 중국 문화의 영향이 약하였다.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조선, 琉球, 베트남 등을 꼽을 수 있으며, 禮部가 이들과의 관계를 관할하였다. 반면에 후자는 理藩院의 관할이었다(Mancall 1968: 72-75).²²⁾

禮部-농경사회와 理藩院-유목사회라는 맨콜의 ‘이원구조’는 학계에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왔다(모테기 도시오 2004: 144-146; 平野聰 2007: 157-159). 그런데, 만약 淸이 조선, 琉球, 베트남 등을 동일한 범주의 국가로 인식하였다면, 본고의 고찰 대상인 칙사의 인선에서도 이들 세 나라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마침 禮部 관할의 많은 朝貢國 가운데 淸이 칙사를 파견했던 나라는 조선, 琉球, 베트남 등의 세 나라로 제한되어 있었다.²³⁾ 따라서 淸의 조선사행 인선에서 드러난 ㉠와 ㉡의 의미를 음미하고자 할 때 琉球와 베트남은 절호의 비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淸이 琉球·베트남에 파견했던 책봉사의 인선에 관한 원칙은 조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嘉慶 □□欽定大清會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무릇 冊封使는 모두 [황제의] 特簡을 받든다. ... 琉球와 越南[으로 가는] 正使와 副使는, 內閣典籍, 中書, 翰林院侍讀, 侍講, 修撰, 編修, 檢討, 六科給事中, 禮部郎中, 員外郎, 主事를 쓰는데, 먼저 奏請하여 各衙門에 儀도가 修偉한 滿·漢 各官을 뽑아 보내고 아울러 禮部の 滿·漢 司官을 가려 뽑도록 해서, 帶領하여 引見한 뒤 [황제께서] 簡用하시길 삼가 청한다.²⁴⁾

22) 1984년에 출판한 저서에서 맨콜은 전자를 “the Maritime Crescent”, 후자를 “the Inner Asian Crescent”로 바꾸어 불렀고, 전자에서 조선을 첫 번째로 꼽았다(Mancall 1984: 131-158).

23) □□淸史稿□□ 卷93, 2722쪽.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사와 부사의 인선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둘째, 칙사 인선의 대상이 하급 관원이었다. 먼저 內閣의 典籍은 정7품, 中書는 종7품이었고, 翰林院의 侍讀과 侍講은 종5품, 修撰은 종6품, 編修는 정7품, 檢討는 종7품이었으며, 六科의 給事中은 정5품이었다. 禮部의 郎中은 정5품, 員外郎은 종5품, 主事는 정6품이었다(李鵬年 1989: 430-435). 셋째, 유구와 베트남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는 滿洲와 漢人을 병용하였다. 이는 各衙門의 “滿漢各官”과 禮部의 “滿漢司官”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琉球·베트남에 파견되었던 칙사의 인선은 이 원칙과 부합하였을까? 먼저 琉球의 경우는 順治 11년부터 乾隆 20년까지 있었던 네 차례의 칙사 인선만을 대상으로 實錄의 인선 기록과 □□職官年表□□ 등을 대조하여 칙사의 출신을 확인해 보겠다. 順治 11년 7월 淸은 琉球로 파견하는 책봉 정사로 兵科 副理事官 張學禮을, 부사로 行人司 行人 王垓를 선발하였다.²⁵⁾ 順治 연간 六科의 副理事官은 八旗 漢軍 출신이었으므로(李鵬年 1989: 411). 張學禮는 漢人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王垓는 山東 膠州 출신의 漢人이었다.²⁶⁾ 그러므로 順治 11년의 琉球 책봉사 인선은 관직에서는 (가)의 정례와 딱 들어맞지 않았지만, 滿漢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례와 어긋나지 않는다.

康熙 21년 칙사로 파견된 翰林院 檢討 汪楫과 內閣 中書舍人 林麟焜은 모두 漢人이었고,²⁷⁾ 康熙 57년의 칙사 가운데 翰林院 檢討 海寶는 鑲白旗 滿洲, 編修 徐葆光是 漢人이었다.²⁸⁾ 끝으로 乾隆 20년의 칙사 중에서 翰林

24) 嘉慶 □□欽定大清會典□□ 卷31, 13b-14a쪽.

25) □□順治實錄□□ 卷85, 順治 11년 7월 戊子, 667쪽. 단 이 두 사람이 실제 유구에 간 것은 강희 초였다(王士禛, □□池北偶談□□, 23쪽).

26) □□職官年表□□, 3137쪽.

27) □□康熙實錄□□ 卷102, 康熙 21년 4월 辛卯, 25쪽. 汪楫은 □□職官年表□□, 3162쪽, 林麟焜은 □□職官年表□□, 3180쪽.

28) □□康熙實錄□□ 卷79, 康熙 57년 6월 庚辰, 734쪽. 海寶는 □□職官年表□□, 3200쪽, 徐葆光

院 侍講 全魁는 鑲白旗 滿洲였고, 編修 周煌은 漢人이었다.²⁹⁾ 따라서 康熙 연간 이후 淸이 琉球에 파견한 책봉사의 인선은 칙사의 관직이나 출신 모두 (가)와 일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베트남의 경우를 보자. <표 A>는 淸이 베트남(安南/越南)에 파견한 칙사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³⁰⁾ 康熙 5년과 康熙 8년에 파견된 칙사의 관직은 (가)에 열거된 것과 차이가 있지만, 칙사의 면면을 보면 程芳朝는 安徽 桐城 출신, 張易賁은 河南 盧氏 출신, 李仙根은 四川 遂寧 출신으로³¹⁾ 오히려 漢人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康熙 22년에서 乾隆 2년까지는 관직과 이름만 보아도 (가)의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乾隆 26년의 경우는 正白旗 滿洲인 德保와 四川 華陽 출신의 漢人인 顧汝修가 칙사로 파견되었는데,³²⁾ 후자의 관직인 大理寺少卿은 (가)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었다.

<표 A> 淸이 安南/越南에 파견한 칙사

시기	정사		부사		비고
	관직	이름	관직	이름	
康熙 5년	內國史院侍讀學士	程芳朝	禮部郎中	張易賁	
康熙 8년	內秘書院侍讀	李仙根	兵部主事	楊兆傑	
康熙 22년	翰林院侍讀	明 圖	翰林院編修	孫 卓	冊封
	翰林院侍讀	鄔 黑	禮部郎中	周 燦	諭祭
康熙 58년	內閣中書	鄧廷喆	翰林院編修	成 文	

은 □□職官年表□□, 3198쪽.

29) □□乾隆實錄□□ 卷488, 乾隆 20년 5월 庚辰, 120쪽. 全魁는 □□職官年表□□, 3148쪽, 周煌은 □□職官年表□□, 3175쪽.

30) 淸이 安南/越南에 파견한 칙사의 관직과 명단은 山本達郎 1975: 592-593, 684-694에 정리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31) 程芳朝는 □□職官年表□□, 3235쪽, 張易賁은 □□職官年表□□, 3210쪽, 李仙根은 □□職官年表□□, 3165쪽.

32) 德保는 □□職官年表□□, 3263쪽, 顧汝修는 □□職官年表□□, 3284쪽.

시기	정사		부사		비고
	관직	이름	관직	이름	
雍正 12년	翰林院侍讀	春 山	兵科給事中	李學裕	
乾隆 2년	翰林院侍讀	嵩 壽	翰林院修撰	陳 倓	
乾隆 26년	翰林院侍讀	德 保	大理寺少卿	顧汝修	
乾隆 53년	兩廣總督	孫士毅	-	-	黎朝 昭統帝
乾隆 54년	廣西候補道	成 林	-	-	西山 阮文惠
嘉慶 8년	廣西按察使	齊布森	-	-	
道光 원년	廣西按察使	潘恭辰	-	-	
道光 21년	廣西按察使	寶 清	-	-	
道光 28년	廣西按察使	勞崇光	-	-	

한편 乾隆 53년 兩廣總督 孫士毅가 책봉사로 파견된 이후로는 京官이 아닌 지방관이 칙사로 파견되어 (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선의 경우 道光 24년 이후 칙사 인선의 대상 관직이 변화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孫士毅, 潘恭辰, 勞崇光 등은 漢人,³³⁾ 成林(鑲藍旗 滿洲), 齊布森(鑲紅旗 滿洲), 寶清 등은 旗人³⁴⁾으로, 칙사의 인선에서 滿漢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 朝鮮使行의 人選 原理에 대한 검토

위에서 淸이 琉球·베트남에 파견했던 칙사의 인선 관련 정례와 인선 실태를 검토해 보았는데, 조선의 경우와 비교할 때 琉球와 베트남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33) 孫士毅는 □□職官年表□□ 319쪽, 潘恭辰은 □□職官年表□□ 326쪽, 勞崇光是 □□職官年表□□ 3229쪽.

34) 成林은 □□職官年表□□ 316쪽, 齊布森은 □□職官年表□□ 3258쪽, 寶清은 道光 28년 刑部의 滿洲 左侍郎이었다(□□職官年表□□, 488쪽).

첫째, 琉球와 베트남에 파견한 칙사는 5품 이하의 하급 관원을 인선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琉球와 베트남에 파견한 칙사는 滿·漢을 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淸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인선과 琉球·베트남에 파견한 칙사의 인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셈인데,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의 인선 유형을 ‘조선형’, 후자를 ‘유구형’으로 부른다면, 두 유형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B> 칙사 인선의 두 유형: ‘조선형’과 ‘유구형’

유형	관 직	출신
조선형	3품 이상의 고급 관원	旗人
유구형	5품 이하의 하급 관원	滿·漢

두 유형의 차이로는, 첫째 ‘조선형’의 경우에는 3품 이상의 고급 관원을 인선 대상으로 한 반면 ‘유구형’의 경우는 5품 이하의 하급 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선형’은 旗人 관료만을 인선 대상으로 하였지만 ‘유구형’은 滿漢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 칙사를 파견할 때에는 漢人 관료가 배제되었던 반면에 琉球와 베트남의 경우에는 漢人 관료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 양자의 차이를 낳은 ‘원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차이가 그 어떤 ‘원리’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단지 우연하게 이루어진 先例가 祖法의 墨守에 의해 반복됨으로써 관행으로 발전하고 그 관행이 다시 정례로 정착되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사행 인선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미 정착된 정례에 대하여 道光 중기 이후 중대한 변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품 이상의 문무 관원 가운데 旗人을 칙사로 파견한다는 점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淸의 칙사 인선에 모종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후술하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관직’의 차이보다는 ‘출신’의 차이가 칙사 인선의 ‘원리’를 논하기에

더 적합한 듯하지만, ‘관직’의 차이 역시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역사적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康熙 〇〇大清會典〇〇은 淸에 조공하는 “各國의 次序는 (처음) 入貢한 해를 (기준으로) 先後”를 정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³⁵⁾ 조선에 대하여 “諸番 가운데 勅順이 가장 빨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³⁶⁾ 이는 崇德 연간에 처음 입공한 조선에, 각기 順治 연간과 康熙 연간에 입공한 琉球와 베트남 보다는 더 높은 위상을 부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단지 입공의 선후만이 아니라 입공 당시의 상황 역시 직사의 인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淸의 太宗은 崇德 元年 12월에 조선을 침공하였다(丙子胡亂). 조선의 仁祖는 그 무력에 굴복하여 三田渡에서 치욕스러운 항복 의식을 치러야 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전대미문의 굴욕으로 기억하지만, 압도적인 무력에 무릎을 꿇고 稱臣함으로써 朝貢國이 된 조선에 대한 淸의 인식은 우리의 예상과는 멀지감치 떨어진 것이었다. 仁祖가 三田渡의 치욕을 겪어야 했던 崇德 2년 正月 庚午의 상황을 전하는 다음 기록에 주목해 보자.

禮部の 관원이 ... 李倬의 班次[를 어찌 할지] 奏請하자, 황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세로써 그를 떨게 하는 것은 덕으로써 그를 품는 것만 못하다. 朝鮮의 王은 비록 兵勢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來歸하였지만, 역시 一國의 王이다.” 命을 내려 앞으로 다가와 왼쪽에 앉게 했다. ... 그 다음으로 는 왼쪽에 和碩親王, 多羅郡王, 多羅貝勒 등의 순서대로 앉았고, 李倬의 長子 李왕이 貝勒의 아래에 앉았다.³⁷⁾

이 기록에 의하면, 淸의 太宗은 “以德懷之”의 차원에서 당시 제2위의 자리

35) 康熙 〇〇大清會典〇〇 卷72, 1b쪽.

36) 康熙 〇〇大清會典〇〇 卷72, 3b쪽.

37) 〇〇太宗實錄〇〇 卷33, 崇德 2年 正月 庚午, 432쪽.

에 仁祖(李祹)를 앉혔고, 그 이유로 仁祖가 엄연한 “一國之王”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같은 상황을 전하는 □□淸朝文獻通考□□는 “一國之王” 대신에 “一國之主”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主”란 만주어 “ejen”의 번역이었을 것이다.³⁸⁾ “一國之王”이든 “一國之主”이든 간에, 淸 太宗은 仁祖가 남의 신하가 아니라 엄연한 ‘주권자’인 남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셈이다. 물론 淸 太宗의 이러한 태도는 後顧의 염려를 덜기 위한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제스처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朝鮮國王의 班次는 황제에 다음 가는 자리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조선형’ 칙사의 인선에서 3품 이상의 고급 관원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정례의 성립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康熙 12년에 정해진 宗室 封爵의 책봉에 관한 의례를 보면, 郡王 이상을 책봉할 때에는 內大臣이나 散秩大臣을 정사로, 內閣과 翰林院의 學士나 禮部侍郎을 부사로 한 반면에, 貝勒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內閣의 侍讀學士, 侍讀, 翰林院의 侍讀學士, 侍講學士, 侍讀, 侍講을 정사로, 禮部の 郎中, 員外郎, 主事를 부사로 삼고 있다. 이는 필자의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³⁹⁾

그러나 三田渡의 班次 결정에서 보이는 朝鮮國王에 대한 ‘우대’는 입관 이후 淸의 칙사 인선에서 漢人 출신이 배제된 까닭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형’과 ‘유구형’의 두 번째 차이점, 즉 ‘출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각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의 군사적 중요성일 것이다. 사실 입관 전의 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조선 침략을 단행했던 데에는 부족한 물자와 인력을 조달함과 동시에 明과의 전쟁에서 後顧의 염려를 잠재운다는 군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한명기 2006: 230-241). 입관 후에도 조선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나라였다. 수도인 北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나라

38) □□淸朝文獻通考□□ 卷293, 考7418쪽.

39) □□欽定八旗通志□□ 卷78, 1336쪽.

이자 과거의 적국이었던 탓에 淸은 조선에 대하여 後顧의 염려를 완전히 떨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역시 淸의 피정복민 출신인 漢人을 조선에 칙사로 파견하는 데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중대한 약점이 있다. 먼저 이 설명은 淸의 漢人 관료를 죄다 잠재적인 反淸 세력으로 가정해야만 성립할 수가 있는데, 입관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18세기와 19세기까지 유효한 가정으로 간주하기엔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漢人 칙사가 조선과 反淸 행위를 공모할 가능성을 淸이 염려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염려는 旗人 칙사를 함께 파견함으로써 얼마든지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淸이 漢人 칙사를 조선에 파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滿漢을 가리지 않았던 ‘유구형’ 인선은 琉球와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淸은 順治 연간 내내 李自成 등이 이끌던 농민반란의 잔존 세력과 여러 南明 정권을 제압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으며, 동남 연해를 무대로 反淸 활동을 계속한 鄭氏 세력 때문에 順治 13년에는 海禁을, 順治 18년에는 遷界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康熙 초에는 三藩의 亂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Dennerline 2002: 136-150). 다시 말해서 입관 이후 1680년대 초까지는 琉球와 베트남이 인접하고 있는 동남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오히려 조선 방면보다도 훨씬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淸이 琉球와 베트남에 漢人을 칙사로 파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면, 군사적 고려가 조선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을 배제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할 듯하다.

하지만 적어도 順治 연간까지는 조선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요인과 결합하는 경우 淸이 조선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조선은 淸의 朝貢國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淸을 줄곧 오랑캐로 여기고 한 동안 北伐을 기도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의 뿌리 깊은 反

淸 의식을 고려한다면, 淸이 조선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품고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한명기 2003: 55-66). 그러나 淸의 조선에 대한 의심과 감시의 필요성은 反淸復明 세력을 최종적으로 제거한 17세기 말 이후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홍성구 2005: 113-129).

사실 18세기 이후 淸朝의 조선 인식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읽어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단적인 사례로, 康熙 45년 10월, 康熙帝는 시종 明을 배반하지 않았던 조선에 대하여 적대감을 표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賞讚할 정도의 우호적인 조선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⁴⁰⁾ 康熙帝의 이런 인식은 한 발 더 나아가, 太宗의 조선 침공이 譯官들의 장난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였다.⁴¹⁾ 이러한 康熙帝의 조선 인식은 훗날의 황제들에게도 고스란히 계승되었다.⁴²⁾

18세기 이후 뚜렷해지는 淸-조선의 우호적 관계는 淸의 조선에 대한 칙사 파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17세기 후반의 경우 淸은 걸핏하면 조선에 칙사를 파견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칙사 파견의 사유 또한 실로 다양하였다. 예컨대 順治 연간에 18년 동안에 청조는 칙사를 39회나 파견하였고, 康熙 연간에는 초기 20년 동안에 26회 파견하여, 그 빈도가 연 평균 1회를 넘어서고 있었다. 또한 칙사를 파견한 사유 가운데에는 조선에 대한 견제나 노골적인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어 이후에는 칙사 파견의 빈도가 점차 낮아져서, 乾隆 연간의 경우에는 60년 동안 겨우 18회의 칙사를 파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는 19세기에 도 지속되었다. 또 淸이 칙사를 파견한 사유도 두 나라 군주의 중대한 ‘慶弔

40) □□康熙實錄□□ 卷227, 康熙 45年 10月 丁未, 275쪽.

41) □□康熙實錄□□ 卷249, 康熙 51年 3月 辛卯, 470쪽.

42) “朝鮮國素稱恭順, 比於內臣”(□□乾隆實錄□□ 卷1215, 乾隆 49年 9月 庚辰, 297쪽); “朝鮮國較之諸外藩, 歸命最先, 受恩尤重”(□□嘉慶實錄□□ 卷37, 嘉慶 4年 正月 丙寅, 418쪽); “朝鮮國久列藩封, 最為恭順”(□□道光實錄□□ 卷3, 嘉慶 25年(道光 즉위년: 인용자) 8月 戊申, 110쪽) 등을 참조.

辭'로 제한되었다. 예컨대 嘉慶 연간에 淸의 칙사 파견은 모두 여덟 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는 乾隆帝의 사망을, 두 번째는 乾隆帝의 “配祀天地”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正祖의 諡祭와 純祖의 책봉, 네 번째는 皇后 冊立, 다섯 번째는 조선의 왕비 책봉, 여섯 번째는 조선의 貞純大妃 諡祭 등이 칙사 파견의 사유였으며, 일곱 번째는 조선의 世子 책봉을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嘉慶帝의 사망과 道光帝의 등극을 알리기 위한 칙사 파견이었다.⁴³⁾ 따라서 초기의 칙사 파견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후기의 경우는 의례적인 성격에 불과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우호적인 양국 관계 속에서 진행된 대단히 의례적인 칙사 파견에 조선에 대한 淸의 의심과 견제가 칙사 인선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다.

물론 초기의 의심과 견제가 동기가 되어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을 배제하는 관행이 굳어졌고 그것이 祖法 목수의 관성 탓에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道光 중기 이후 칙사 인선의 변화를 보면 祖法 목수의 관성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漢人을 배제하는 ‘조선형’ 칙사 인선의 ‘원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結論: ‘大清帝國體制’와 勅使 人選의 原理

조선의 군사적 중요성이나 淸의 조선에 대한 의심이나 견제가 ‘조선형’ 칙사 인선에서 관찰되는 漢人의 배제 현상과 그 강고한 지속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淸의 칙사 인선에서 드러난 ‘조선형’과 ‘유구형’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필자는 지나친 비약으로 흐르게 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형’ 칙사 인선에 나타나는 漢人 배제 현상을 설명

43) □□同文彙考□□ 補編 卷9 「詔勅錄」, 4b-41b쪽.

하기 위하여 다소 과감한 試論的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새로운 해석을 위한 실마리는 책봉 관계의 성립 시점과 그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의 세 기사는 조선, 琉球, 베트남 등이 淸의 책봉을 받은 시점과 그 방식을 간단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 (㉠) 崇德 2年, 朝鮮國王 李倧이 온 나라를 들어 歸附하였다. 勅을 내려 [그를] 朝鮮國王으로 책봉하였다. 龜紐金印을 하사하였으며 誥封을 주었다. 王의 妻는 王妃로, 아들은 世子로 책봉하였다.⁴⁴⁾
- (㉡) 順治 11년, 琉球國의 世子 尚質이 陪臣을 보내어 明季의 鍍金銀印 一顆와 襲封王爵詔 한 통, 勅書 한 통 등을 반납하였다. 正·副使를 파견하여 詔와 勅 각 한 통 및 鍍金駝紐銀印 一顆를 가지고 가서 琉球國의 世子 尚質을 中山王으로 책봉하였다.⁴⁵⁾
- (㉢) 康熙 5年, 安南國의 世子 黎維禕가 明季의 勅 한 통, 印 一顆를 보내 왔다. 正·副使를 파견하여 勅 및 주소해 준 鍍金駝紐銀印을 가지고 가서 黎維禕를 安南國王으로 책봉하였다.⁴⁶⁾

먼저 (㉠)에서 보듯이 淸의 朝鮮國王 책봉은 입관 전인 崇德 연간에 淸이 조선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킨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반면에 (㉡)과 (㉢)에서 보듯이 琉球와 베트남은 모두 입관 이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淸의 朝貢國이 되었다. 두 나라가 明의 책봉을 받으면서 수령했던 칙서와 도장을 반납하자, 淸은 이를 대체하는 칙서와 도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두 나라의 국왕을 책봉하였던 것이다. 비유하건대, 朝-淸의 관계가 淸이 무력을 동원하여 직접 ‘획득’한 것이었다면, 淸이 琉球·베트남과 맺은 관계는 明의 유산을 ‘상속’한 것이었던 셈이다.

44) 嘉慶 □□欽定大清會典事例□□ 卷392, 2b-3a쪽.

45) 嘉慶 □□欽定大清會典事例□□ 卷392, 3b쪽.

46) 嘉慶 □□欽定大清會典事例□□ 卷392, 4b쪽.

그렇다면 책봉의 시점과 그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칙사의 인선 유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맨콜의 ‘이원구조’에 다시 주목해보자. 맨콜의 ‘이원구조’는 淸의 조공체제(the tributary system)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과거 明의 영토였던 直省도 어떤 의미에서는 ‘동남 초승달’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直省의 통치를 위하여 淸은 明의 典章制度를 계승함과 동시에 滿·漢 출신을 모두 등용하였다. 반면에 ‘서북 초승달’ 지역에 속하는 藩部 통치에는 漢人 출신 관료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또한 이 같은 통치의 ‘원리’는 적어도 19세기 중엽까지는 엄격하게 준수되었다.

그런데, 淸이 일관되게 漢人의 참여를 배제하였던 藩部와,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의 참여가 역시 일관되게 배제되었던 조선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藩部는 비록 18세기 중엽에 완성된 것이지만, 淸의 입장에서 藩部の 형성은 17세기 초에 시작된 淸의 몽골에 대한 통제에서 그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하르를 복속시키는 데 성공한 後金의 汗 홍타이지는 1636년에 ‘大清’의 성립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당시 조선은 ‘大明’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여 홍타이지가 구축하려 했던 ‘大清’ 중심의 독자적인 국제 질서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홍타이지는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丙子胡亂)시켰고, 조선은 ‘大清’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崇德 연간의 조선은 훗날 藩部 형성의 단초가 되는 몽골과 함께 ‘大明’ 질서에 대항하는 ‘大清’ 질서의 兩翼을 구성하게 되었다.⁴⁷⁾

47) 청은 1636년에 몽골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몽고아문을 설치하였다가, 1638년에 이르러 그 이름을 이번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조선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승덕 연간 청조의 조선 관련 사무가 입관 이후와 마찬가지로 예부의 관할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입관 전 禮部를 포함한 六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淸이 같은 ‘外藩’임에도 불구하고 몽골과 조선에 관한 사무를 별도의 기구에 맡겼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터이지만, 전자의 사무에는 몽골어가,

한편 ‘유구형’ 칙사 인선과 明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인선(前述)을 비교해 보면, 宦官의 칙사 파견을 제외하면 인선의 대상이 된 관직에 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구형’ 인선은 明의 방식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崇德 연간의 시점에서 琉球·베트남은 여전히 ‘大明’ 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琉球·베트남은 淸이 明의 典章制度를 계승함과 동시에 滿·漢 출신을 모두 등용하였던 直省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崇德 연간의 ‘大清’ 질서와 ‘大明’ 질서를 통합하여 확대·발전 시킨 ‘大清帝國體制’의 공간은 漢人 출신 관원의 참여가 인정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崇德 연간의 ‘大清’ 질서에 속했던 공간에서는 漢人의 참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반면에, 崇德 연간 여전히 ‘大明’ 질서에 속해 있던 공간에 대해서는 漢人의 참여가 인정되었다. 전자에는 조선과 함께 몽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8세기 중엽에 완성된 藩部는 淸의 입장에서 볼 때 崇德 연간의 몽골이 확대된 것이었다. 후자에는 과거 明의 영토와 琉球·베트남과 같은 朝貢國이 속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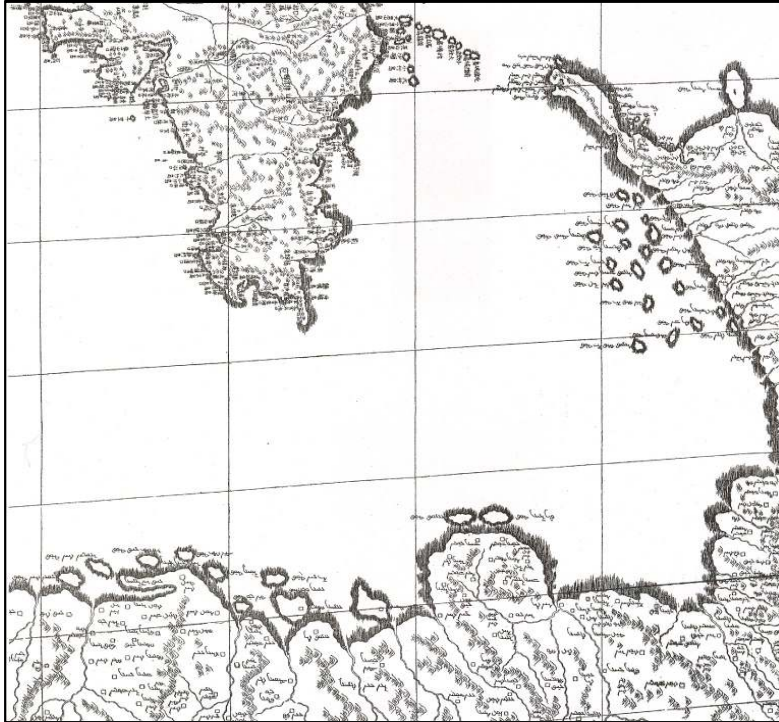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맨콜의 ‘이원구조’에서 조선은 琉球·베트남과 동일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淸의 ‘조선형’ 칙사 인선에 나타나는 漢人 배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자의 試論的 해석에 따르자면 琉球·베트남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조선을 ‘大明’ 질서의 바깥에 위치시키는 淸의 인식은 康熙 연간에 완성된 □□皇輿全覽圖□□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皇輿全覽圖□□의 여러 판본 가운데 康熙 58년의 銅版并幅本은, 民國 연간 瀋陽에서 발견되어 金梁에 의해 □□淸內府一統輿地秘圖□□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孫喆 2003: 53-45).⁴⁸⁾ □□皇輿全覽圖□□의 다른 판

후자에는 한문이 주요 언어로 사용되었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본다. 이런 추정은 연세대 사학과 차혜원 교수의 조언에 힘입은 것이다.

48) 이 지도는 국내의 경우 서울대 도서관에 1책(분류번호: 大 4709 53)이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淸廷三大實測全圖集의 일부로 영인·출판된 바 있다(□□淸廷三大實測全圖: 康熙皇輿全覽圖□□, 北京: 外文出版社).

본들이 모든 지명을 漢文으로 표기한 것과 달리 만주어와 한문을 지명 표기에 사용한 滿漢合璧의 지도이다.

<그림 1> □□清內府一統輿地秘圖□□(四排二號의 일부)



<그림 1>은 이 지도에서 山東과 遼東, 그리고 한반도가 함께 그려진 부분(四排二號)인데, 直省인 山東의 지명이 한문으로 표기된 것과 대조적으로 遼東의 지명은 만주어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할 대목은 조선의 모든 지명이 한문이 아닌 만주어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도에서 지명이 한문으로 표기된 지역은 과거 明의 영토였던 直省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만주어로 지명이 표기되어 있으니, 淸이 그들의 ‘세계’

를 양분할 경우 조선을 ‘大明’의 세계 바깥에 위치시켰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도에서 지명이 한문으로 표기된 지역은 漢人 출신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지역인 반면에, 만주어로 표기된 지역에서는 漢人의 참여가 배제되었다.⁴⁹⁾

49) 비록 실제 지도에서는 琉球와 베트남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만약 이 지도에 琉球와 베트남을 포함되었다면 그 지명은 아마도 한문으로 표기되지 않았을까?

[부 록]

<표 1> 順治 초기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S01-3	X	禮部侍郎		藍所伊	e1			席所	x1
S02-1	X	戶部郎中		亞赤	x2	刑部郎中		羅車	x3
S02-2	X	工部尙書		興能	e2	攝政王 一等近侍	a	石大理	
S02-3	X	內翰林		祁充格	e3	禮部郎中		朱	x4
S04-1	X	啓心郎	a	布黨		內翰林 秘書院學士		伊	c1
S04-2	X	啓心郎	a	鄔黑		蝦	a	毛	
S05-1	X	內翰林		額	c2	蝦	a	哈	
S05-2	X	禮部威勒	a-	恩格待		秘書院 阿思哈	a-	胡里	
S06-1	X	禮部啓心郎	a	烏許		戶部愛什喇 庫哈峰	a-	谷	
	X	戶部啓心郎	a	甫大樂古		蝦	a	察斜大	

- c1. “伊”: 內翰林秘書院 學士 (覺羅)伊圖(職885).
 - c2. “額”: 內翰林國史院 學士 額色黑, 鑲黃旗 滿洲(職886, 職3279).
 - e1. “藍所伊”: 滿洲 禮部侍郎 藍拜(職336)와 동일 인물로 보임.
 - e2. “興能”: 滿洲 工部尙書 星納(職158)의 다른 轉寫.⁵⁰⁾
 - e3. “祁充格”: 鑲白旗 滿洲(職3180).⁵¹⁾
 - x1~x3. “席所”, “亞赤”, “羅車”: 漢人의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 x4. “朱”: 출신 불확실.
 - * “攝政王 一等近侍”(S02-2)에 관한 기록은 찾지 못했지만, 당시의 攝政王 도르곤(Dorgon)의 지위를 고려하건대 그 侍衛는 황제의 侍衛와 마찬가지로 八旗 武職이었다고 단정해도 대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⁵²⁾ 다음으로 “啓心
- 50) 당시 星納이 조선에 칙사로 파견된 사실은 □□順治實錄□□에서도 확인된다(□□順治實錄□□ 卷16, 順治 2年 5月 戊申, 147쪽).
- 51) 당시 祁充格이 “內翰林弘文院大學士”로 조선에 칙사로 파견되었음은 □□順治實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順治實錄□□ 卷21, 順治 2年 11月 己未, 187쪽).
- 52) 攝政王 도르곤에 대해서는, Dennerline 2002: 73-106 참조.

郎”(S04-1)은 天聰 5년(1631) 六部를 설치할 때부터 등장하는 官名으로, 만주어 “mujilen bahabukū”를 漢譯한 것인데(劉小萌 2001: 331), 六部에서 啓心郎은 順治 15년에 폐지되었다(李鵬年 1989: 139). 입관 전의 啓心郎에 “國語를 잘 하는 漢員”을 임명하였다는 □□嘯亭雜錄□□의 기록과⁵³⁾ 後金 시기 啓心郎이 六部の 貝勒을 감시하는 汗의 耳目 역할을 하였다는 근래의 연구 성과(劉小萌 2001: 331-332), 그리고 康熙 12년까지 남아있던 宗人府의 啓心郎이 八旗 漢軍(“烏金超哈”) 출신이었다는 사실⁵⁴⁾ 등을 종합해 볼 때, 입관 후에 漢人 官료가 啓心郎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로 <표 1>에 보이는 4인의 啓心郎 중에서 3인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旗人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布黨”(S04-1)은 □□淸實錄□□에 “布丹”으로 표기되어 있는데,⁵⁵⁾ 布丹은 八旗 滿洲 출신으로 順治 12년 滿洲 工部侍郎에 임명된 자였다.⁵⁶⁾ “烏許”(S06-1)는 □□淸實錄□□에 “渥赫”으로 표기되어 있는데,⁵⁷⁾ 渥赫은 正藍旗 滿洲 출신이었다.⁵⁸⁾ “甫大樂古”(S06-1)는 □□淸實錄□□에 “戶部啓心郎 布丹”이라 기록되어 있어,⁵⁹⁾ “布黨”(S04-1)과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蝦”(S06-1)는 “侍衛”를 뜻하는 만주어 “hiya”를 轉寫한 것이다. 「詔勅錄」에는 “蝦”처럼 만주어 관명을 한자로 轉寫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禮部威勒 恩格待”(S05-2)는 “禮部威勒議起喇哈峰 恩格待”를 줄여서 적은 것인데,⁶⁰⁾ “威勒議起喇哈峰”은 만주어 관명의 轉寫가 분명하지만, 六部에는 이렇게 전사될 만한 만주어 관명이 존재하지 않았다.⁶¹⁾ 하지만 漢人 官료의 경우라면 만주어 관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터이므로 恩格待는 旗人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 恩格待는 順治 8년 理事官에서 滿洲 禮部侍郎으로 승진한 恩格德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⁶²⁾ <표 1>에는 만주어 관명을 轉寫한 경우가 두 건 더 있다. “秘書院阿思哈 胡里”(S05-2)는 “秘書院阿士哈尼筆帖大 胡里”를 줄여 적은 것으로,⁶³⁾ “阿士哈

-
- 53) 昭槤, □□嘯亭雜錄□□, 43쪽. 단 여기서 말하는 “漢員”이란 입관 전에 혈통적으로 漢人인 관원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입관 후의 漢人 출신 관원과는 구별해야 한다.
- 54) □□歷代職官表□□ 卷1, 3b쪽; 王士禛, □□池北偶談□□, 61-62쪽.
- 55) □□順治實錄□□ 卷30, 順治 4年 正月 戊午, 246쪽.
- 56) □□職官年表□□, 3143쪽, 343쪽.
- 57) □□順治實錄□□ 卷45, 順治 6年 8月 丁未, 363쪽.
- 58) □□職官年表□□, 3233쪽.
- 59) □□順治實錄□□ 卷45, 順治 6年 8月 丁未, 363쪽.
- 60) 「賜緞勅」, □□同文彙考□□ 原編 卷7, 21b쪽.
- 61) 다만 “ichiyara hafan”(理事官/郎中)을 잘못 轉寫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 정도가 가능하다.
- 62) □□職官年表□□, 340쪽.
- 63) 「賜緞勅」, □□同文彙考□□ 原編 卷7, 21b쪽.

尼筆帖大”는 “ashan i bithei da”(學士)의 轉寫이다. 또 “戶部愛什喇庫哈峰谷”(S06-1)에서 “愛什喇庫哈峰”은 “aisilakū hafan”(副理事官/員外郎)의 轉寫이며 “谷”은 “谷兒馬洪” 즉 조선 출신의 인물인 鄭命壽를 가리킨다.⁶⁴⁾ 이상의 경우들은 관직 자체는 “滿缺”이 아니지만 해당 직사의 관명이 만주어로 표기된 사실만으로도 그가 漢人이 아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 2> 順治 중기의 직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S07-1	X	戶部尙書		巴	c1	圖章京	a	曹	
	X	內院太學士		祁	c2				
S07-2	X	戶部侍郎		車元	e1			賈	x1
S07-3	X	禮部侍郎		藍	c3			布	x2
S07-4	X	刑部啓心郎	a	額色黑	旣出	學士		賚功	e2
S07-5	X	刑部侍郎		達	e3	內院阿思哈大	a-	馬	
S07-6	X	吏部啓心郎	a	寧		阿思哈大	a-	土	
S08-1	X	禮部尙書		阿思哈	e4	內院阿思哈大	a-	察	
S08-2	X	啓心郎	a	寧	旣出	兵部侍郎		特	c4
S08-3	X	工部理事官	a-	奚		戶部理事官	a-	巴	
S08-4	X	吏部侍郎		涂	e5	內院學士		葉	c5
S09-1	X	刑部侍郎		易	e6	內院學士		黑	x3
S09-2	X	學士		蘇納	c6	梅勒章京	a	胡復	
S10-1	X	禮部尙書		郎	c7	蝦	a	灘	
S11-1	X	刑部尙書		巴	c8	都察院正堂		圖	e7
S11-2	X	阿思哈	a-			內院學士		奚	x4
S11-3	X	吏部侍郎		寧	c9			莫	x5
S12-1	X	內大臣	a	吳拜		侍郎		科兒坤	e7

- c1. “巴”: 滿洲 戶部尙書 (覺羅)巴哈納(職161).
- c2. “祁”: 內翰林弘文院 大學士 祁充格, 鑲白旗 滿洲(職5, 職3180).
- c3. “藍”: 滿洲 禮部侍郎 藍拜(職339).
- c4. “特”: 滿洲 兵部侍郎 特晉(職342).
- c5. “葉”: 內翰林國史院 學士 葉成額, 八旗 滿洲(職887, 職3247).
- c6. “蘇納”: 內翰林弘文院 學士 蘇納海, 正白旗 滿洲(職888, 職3283).

64) 鄭命壽에 대해서는, 楊海英 2001: 88-106 참조.

- c7. “郎”: 滿洲 禮部尙書 郎球(職164).
 c8. “巴”: 滿洲 刑部尙書 (覺羅)巴哈納(職165).
 c9. “寧”: 滿洲 吏部侍郎 寧古里(職342).
 e1. “車元”: “車克”의 誤記,⁶⁵⁾ 滿洲 戶部侍郎(職339).
 e2. “賚功”: 內翰林國史院의 學士 來袞(職887)과 동일 인물로 보임.
 e3. “刑部侍郎 達”: “禮部侍郎 達”의 誤記,⁶⁶⁾ 滿洲 禮部侍郎 達爾泰(職339).
 e4. “禮部尙書 阿思哈”: 滿洲 禮部尙書 阿哈尼堪(職162)의 誤記.
 e5. “察”: 內翰林弘文院 學士 查布海(職887)의 다른 轉寫, 八旗 滿洲(職3188).
 e6. “涂”: 滿洲 吏部侍郎 屠賴(職340)의 다른 轉寫.
 e7. “易”: 滿洲 刑部侍郎 伊爾都齊(職341)의 다른 轉寫.
 e8. “圖”: 滿洲 都察院左都御史 屠賴(職165)의 다른 轉寫.
 e9. “侍郎 科兒坤”: 滿洲 兵部侍郎 (覺羅)科爾昆(職342)의 다른 轉寫.
 x1. “賈”: 출신 불학실.
 x2~x5. “布”, “黑”, “奚”, “莫”: 漢人의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 “圖章京”과 “梅勒章京”은 만주어 관명의 轉寫로, “圖章京”은 “tui janggin”= 護軍統領(정2품), “梅勒章京”은 “meiren i janggin”= 副都統(정2품)을 의미하며, 모두 八旗 武職이었다.⁶⁷⁾ “理事官”은 만주어 관명 “icihiyara hafan”의 漢譯인데, 崇德 3년(1638)에 설치되었고 順治 원년(1644)년에 郎中으로 改名되었다(李鵬年 1989: 139; 鄭天挺 1999: 119). 順治 연간까지는 都察院과 六科 등에서 理事官의 존재가 확인되는데(李鵬年 1989: 406, 411), 宗人府의 理事官에는 漢人이 임명될 수 없었으며⁶⁸⁾ 六科의 副理事官은 八旗 漢軍 출신을 위한 관직이었다(李鵬年 1989: 411). 六部의 경우도 “滿洲 郎中과 員外郎은 처음에 理事官과 副理事官으로 불렸는데, 나중에 고쳐서 漢官의 칭호를 따랐다.”는 기록을 보는데,⁶⁹⁾ 漢人 관료는 理事官에 임명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六部의 理事官이 이미 郎中으로 改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詔勅錄」에 六部 소속의 理事官이 등장하는 까닭은, 당시의 칙사가 만주어 관명 “icihiyara hafan”을 사용하였고 「詔勅錄」이 이를 理事官으로 번역했기 때문이거나 旗人 출신의 관료가 理事官이라는 관명을 관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65) 「攝政王定婚後再送禮物勅」, □□同文彙考□□原編 卷79, 2a쪽.

66) 「頒攝政王喪詔」, □□同文彙考□□原編 卷16, 5a쪽.

67) 이하 팔기 무직의 만주어 관명과 한문 관명은, Elliot 2001: 365-368 참조.

68) □□歷代職官表□□卷1, 3b-4b쪽.

69) 王士禛, □□池北偶談□□, 62쪽.

<표 3> 順治 말기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S13-1	X	議政大臣	a	哈什屯		太學士		額色黑	旣出
S13-2	X	多羅機昂邦	a	蘇		刑部侍郎		阿	c1
S14-1	X	多兒吉昂邦	a	阿魯哈		內翰林國史院太學士		額色黑	旣出
S14-2	X	工部尙書		孫	c2	吏部侍郎		覺羅邵	d
S14-3	X	理藩尙書	a	明		弘文院學士		卜	e1
S15-1	X	多羅機昂邦	a	哈		啓心郎	a	巴	
S15-2	X	多里吉昂邦	a	馬爾札哈		侍郎		吳達禮	e2
S16-1	X	禮部尙書		蔣	e3	吏部侍郎		覺羅碩	d
	X	工部尙書		郭科	b1	禮部侍郎		祁繼	c3
S18-1	X	太常卿		馬羅哈	x1	禮部員外郎		邵	x2
S18-2	X	禮部侍郎		折	e4	都察院都御史		對	c4
S18-3	X	理藩院侍郎	a	達		禮部額者庫	a-	甘	

- b1. “郭科”: 滿洲 工部尙書(職246).
- c1. “阿”: 滿洲 刑部侍郎 阿思哈(職344).
- c2. “孫” 滿洲 工部尙書 孫塔(職167).
- c3. “祁繼”: 滿洲 禮部侍郎 祁徹白(職346).
- c4. “對”: 滿洲 都察院左副都御史 對喀納(職346).
- e1. “卜”: 內翰林弘文院 學士 布顏(職893)의 다른 轉寫, 八旗 滿洲(職3144)
- e2. “吳達禮”: 督捕侍郎(職345), 正藍旗 滿洲(職3157).
- e3. “蔣”: 禮部尙書가 아닌 大學士 蔣赫德,⁷⁰⁾ 鑲白旗 漢軍(職3267).
- e4. “折”: 禮部侍郎이 아닌 滿洲 翰林院掌院學士 折庫納(職897).
- e5. “對”: 滿洲 都察院左副都御史 對喀納(職346), 正藍旗 滿洲(職3252).
- x1. “馬羅哈”: 漢人의 姓名이 아님이 거의 확실.
- x2. “邵”: 출신 불확실.
- ※ “議政大臣”은 議政王大臣會議의 일원을 가리키며 모두 滿洲 출신이었다.⁷¹⁾ 다음으로 “多羅機昂邦”, “多兒吉昂邦”, “多里吉昂邦” 등은 모두 內大臣의 만주어 관명(“dorgi amban”)을 轉寫한 것이다. “理藩院侍郎”은 대표적인 滿缺 관직 가운데 하나이고,⁷²⁾ “禮部額者庫”에서 “額者庫”란 主事의 만주어 관명 (“ejeku hafan”)을 轉寫한 것이다.

70) □□順治實錄□□ 卷128, 順治 16年 9月 戊寅, 995쪽.

71) 昭槎, □□嘯亭雜錄□□, 93쪽.

<표 4> 康熙 전반기의 칙사 (1)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K01-1	X	工部尙書		喇	c1	刑部侍郎		尼	c2
K01-2	X	左都御史		覺羅雅	d	郎中		明	x1
K02-1	X	頭等侍衛	a	哈		太淸寺卿		“失其名”	x2
K02-2	X	刑部侍郎		勒得洪	c3	郎中		海喇孫	x3
K04-1	X	工部侍郎		柯	e1	郎中		石	x4
K05-1	X	戶部侍郎		雷虎	b1	郎中		穆	x5
K06-1	X	理藩院侍郎	a	綽		郎中		伍	x6
K06-2	A	一等蝦	a	童		一等蝦	a	顧	
K08-1	X	內大臣	a	巴		噶喇昂邦	a	邵	
K09-1	X	土伊章京	a			一等蝦	a		
K10-1	X	一等侍衛	a	對		二等侍衛	a	鄭	
K13-1	X	宜都額眞	a	胡		侍讀學士		口+賴	e2
K13-2	A	一等侍衛	a	伍		一等侍衛	a	賽	
K13-3	A	一等侍衛	a	德		一等侍衛	a	祁	
K14-1	A	內大臣	a	樹西泰		一等侍衛	a	桑額	
K14-2	X	散秩大臣	a	卜		二等侍衛	a	納	
K15-1	X	宜都額眞	a	噶		二等侍衛	a	費	

b1. “雷虎”: 滿洲 戶部侍郎(職305).

c1. “喇”: 滿洲 工部尙書 喇哈達(職170).

c2. “尼”: 滿洲 刑部侍郎 尼滿(職348).

c3. “勒得洪”: 滿洲 刑部侍郎 (覺羅)勒德洪(職348).

e1. “柯”: 滿洲 工部侍郎 科爾科代(職349)의 다른 轉寫.

e2. “口+賴”: 康熙 14년 侍讀學士에서 滿洲 翰林院掌院學士로 승진한 喇沙里(職906)의 다른 轉寫.

x1 “明”, x3 “海喇孫”, x5 “穆”, x6 “伍”: 漢人의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x2. “失其名”: 출신을 알 수 없음.

x4. “石”: 출신 불확실.

※ “頭等侍衛”는 “一等侍衛”의 다른 표현이고, “土伊章京”은 “圖章京”과 마찬가지로 “tui janggin”을 전사한 것이다. “宜都額眞”은 만주어 “idui ejen”의 轉寫로서 領班 侍衛들을 통솔하는 “領班” 侍衛를 가리킨다(商鴻逵 1990: 226). 噶喇昂邦은 “galai amban”=前鋒統領(정2품)을 轉寫한 것이다.

72) □□淸史稿□□ 卷115, 3296-3297쪽.

<표 5> 康熙 전반기의 칙사 (2)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K16-1	X	頭等侍衛	a	阿		侍讀學士		王	e1
K17-1	X	一等侍衛	a	塞		內閣學士		舒	e2
K17-2	X	一等侍衛	a	馬		二等侍衛	a	噶	
K17-3	A	宜都額眞	a	郎		一等侍衛	a	安	
K18-1	A	一等侍衛	a	費		一等侍衛	a	多	
K19-1	A	內閣學士		希福	e3	一等侍衛	a	壯尼大達	
K19-2	X	一等侍衛	a	孫郭		護軍參領	a	魏	
K20-1	X	翰林院 侍讀學士		牛鈕	e4	二等侍衛	a	覺羅阿	
K20-2	X	一等侍衛	a	羅		護軍統領	a	杭	
K21-1	X	禮部侍郎		阿	e5	四品官		孟	x1
K23-1	B	(一等)侍衛	a	孛柱 巴圖魯		內閣學士		丹代	e6
K23-2	X	內大臣	a	斬		內閣學士 侍讀		賽	e7
K24-1	X	護軍統領	a	佟保		內閣學士		丹	e8
K26-1	X	副都統	a	蘇		護軍參領	a	布	
K26-2	X	一等侍衛	a	趙		二等侍衛	a	齊	
K27-1	A	內大臣	a	阿		一等侍衛	a	羅	
K28-1	X	護軍統領	a	穆圖		侍讀學士		博濟	e9
K28-2	X	二等侍衛	a	豪尙		二等蝦	a	丙鬱	
K28-3	X	副元帥	a	海		一等蝦	a	巴	
K28-4	X	侍讀學士		馬頭	x2	三品蝦	a	斗牛	
K30-1	A	禮部侍郎		西安	e10	一等侍衛	a	羅	

e1. “王”: 康熙 21년 侍讀學士에서 漢缺 內閣學士가 된 王國安(職911), 正白旗 漢軍(職3138).

e2. “舒”: 康熙 18년 侍讀學士에서 滿洲 光祿寺卿이 된 舒恕(職1149).

e3. “希福”: 滿洲 內閣學士 禧佛(職910)의 다른 轉寫.

e4. “牛鈕”: 正藍旗 滿洲(職3135).

e5. “阿”: 滿洲 內閣學士 阿蘭泰(職911).

- e6. “丹代”: 滿洲 內閣學士 丹岱(職913)의 다른 轉寫.
- e7. “賽”: 康熙 25년 侍讀學士에서 滿洲 內閣學士가 된 賽弼漢(職915).
- e8. “丹”: □□同文彙考□□의 다른 기록에 “丹代”⁷³⁾
- e9. “博濟”: 康熙 28년 翰林院 侍講學士에서 滿洲 內閣學士가 된 博際(職918)의 다른 轉寫.
- e10. “西安”: 滿洲 內閣學士 星安(職920)의 다른 轉寫.
- x1. “孟”: 출신 불확실.
- x2. “馬頭”: 漢人의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 ※ 護軍統領과 副都統은 각각 “tui janggjin”의 “meiren i janggjin”의 漢譯임은 앞에서 지적했거니와, 역시 八旗 武職인 護軍參領(정3품)은 “bayara jalan-i janggjin”의 漢譯이다. 다만 “副元帥”(K28-3)는 정식 관명은 아니고 아마도 副都統을 달리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字柱巴圖魯(K23-1)는 「詔勅錄」에 단지 “侍衛”라고 기록되었지만, □□同文彙考□□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 당시 그의 관직이 “一等侍衛”였음을 알 수 있다.⁷⁴⁾

<표 6> 康熙 후반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K33-1	X	經筵日講 官教習庶 吉士		常壽	e1	侍衛	a	事關且	
K36-1	B	散秩大臣	a	永		內閣學士		壽	c1
K36-2	X	副都統	a	瓦		侍讀		覺羅華	d
K41-1	X	翰林院侍讀		滿保	e2	二侍衛	a	專大雅	
K42-1	X	副都統	a	翁		內閣學士		色	c2
K42-2	A	翰林院掌 院學士		揆叙	b1	頭侍衛	a	噶爾圖	
K48-1	X	頭侍衛	a	敖岱		內閣學士		年羹堯	e3
K52-1	X	頭侍衛	a	阿齊圖		護獵總管	a	穆克登	
K56-1	A	翰林院學士		阿克敦	e4	鑾儀衛		張廷枚	e5
K56-2	A	日講官		阿克敦	旣出	鑾儀衛		張廷枚	旣出
K57-1	A	內閣學士		德音	b2	治儀正		張廷枚	旣出

73) 「遣官查擬勅」, □□同文彙考□□ 原編 卷51, 4a-4b쪽.

74) 「諭祭文」, □□同文彙考□□ 原編 卷5, 30b쪽.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K59-1	A	內閣學士		額和納	e6	一等侍衛	a	眞德祿	
K59-2	B	內大臣	a	查柯丹		禮部侍郎		羅	c3
K61-1	X	內閣學士		阿克敦	既出	二等侍衛	a	佛倫	
K61-2	B	頭等侍衛	a	那眞		內閣學士		吳爾泰	b3
K61-3	A	內閣學士		額和納	既出	頭等侍衛	a	廣福	

- b1. “揆叙”: 滿洲 翰林院掌院學士(職929).
- b2. “德音”: 滿洲 內閣學士 (職941).
- b3. “吳爾泰”: 滿洲 內閣學士 (職944).
- c1. “壽”: 滿洲 內閣學士 壽肅 (職925).
- c2. “色”: 滿洲 內閣學士 色德里 (職929).
- c3. “羅”: 滿洲 禮部侍郎 羅瞻 (職390).
- e1. “常壽”: 滿洲 翰林院掌院學士 常書(職922)의 다른 轉寫.
- e2. “滿保”: □□同文彙考□□의 다른 곳에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 覺羅滿保.”⁷⁵⁾
- e3. “年羹堯”: 漢缺 內閣學士(職934), 鑲黃旗 漢軍(職3149).
- e4. “額和納”: 滿洲 內閣學士 額黑納(職942)의 다른 轉寫.
- e5. “阿克敦”: 正藍旗 滿洲(職3183).
- e6. “張廷枚”: 八旗 漢軍(職3209).
- * 穆克登(K52-1)은 백두산 정계비의 건립과 관련하여 유명한 인물이거나, 그 관직 “護獵總管”은 □□清實錄□□에 “打牲烏喇總管”으로 표기되어 있다.⁷⁶⁾ “打牲烏喇總管”은 淸 皇室的 사냥터를 관리하는 內務府 소속의 관직이다(劉子揚 1994: 314; 張存武 1987: 195-196; 張杰 2005:227-228).

<표 7> 雍正 연간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Y01-1	A	內閣學士		常保	b1	頭等侍衛	a	明全	
Y01-2	X	通政使		圖	c1	頭等	a	覺羅七	
Y01-3	B	散秩大臣	a	曾成		內閣學士		鄂托	e1
Y01-4	X	散秩大臣	a	欽拜		都御史		岳	c2
Y01-5	X	副都統	a	額而德		頭等侍衛	a	額麟臣	

75) 「諭祭文」, □□同文彙考□□ 原編 卷5, 36b쪽.
 76) □□康熙實錄□□ 卷246, 康熙 50年 5月 癸巳, 441쪽.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Y03-1	A	散秩大臣	a	覺羅舒祿		翰林院學士		阿克敦	旣出
Y03-2	A	散秩大臣	a	馬蘭泰		內閣學士		德	c3
Y07-1	X	頭等侍衛	a	七十		侍讀學士		雙喜	e2
Y09-1	B	散秩大臣	a	馬哈達		禮部侍郎		傅德	b2
Y09-2	X	大理少卿		巴	x1	二等侍衛	a	巴	
Y13-1	B	散秩大臣	a	法		內閣學士		春	c4
Y13-2	X	兵部侍郎		宗室德沛	d	散秩大臣	a	覺羅海奉	
Y13-3	A	散秩大臣	a	葛爾敦		頭等侍衛	a	薩	
Y13-4	X	散秩大臣	a	兆德		鎮國將軍		宗室釋迦保知伊	d

- b1. “常保”: 滿洲 內閣學士(職944).
- b2. “傅德”: 滿洲 禮部侍郎(職397).
- c1. “圖”: 滿洲 通政使 圖蘭(職1189).
- c2. “岳”: 滿洲 都察院左副都御史 岳色(職392).
- c3. “德”: 滿洲 內閣學士 德新(職947).
- c4. “春”: 滿洲 內閣學士 春山(職954).
- e1. “鄂托”: 滿洲 內閣學士 鄂賴(職945).
- e2. “雙喜”: 雍正 12년 侍讀學士에서 滿洲 內閣學士로 승진(職952).
- x1. “巴”: 漢人의 성명이 아님이 거의 확실.

<표 8> 乾隆 연간의 직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Q02-1	A	散秩大臣	a	保德		頭等侍衛	a	多爾吉	
Q02-2	B	散秩大臣	a	色冷		禮部侍郎		吳奉	e1
Q02-3	B	散秩大臣	a	襄泰		內閣學士		岱	c1
Q13-1	B	散秩大臣	a	博綸岱		內閣學士		書山	b1
Q13-2	B	散秩大臣	a	舒靈阿		內閣學士		鍾音	b2
Q14-1	B	散秩大臣	a	蘇胡集		內閣學士		嵩	c2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Q15-1	A	禮部侍郎		介福	b3	頭等待衛	a	覺羅興長	
Q16-1	B	散秩大臣	a	郭爾多		內閣學士		吳達善	b4
Q20-1	A	散秩大臣	a	宗室巴爾薩		頭等待衛	a	宗臣和奔阿	
Q22-1	A	散秩大臣	a	祥泰		頭等待衛	a	常	
Q24-1	B	散秩大臣	a	宗室鍾福		內閣學士		富德	b5
Q25-1	B	散秩大臣	a	栢成		內閣學士		世臣	e2
Q27-1	A	散秩大臣	a	隆興		頭等待衛	a	德祿	
Q28-1	A	散秩大臣	a	宗室弘暎		頭等待衛	a	廣亮	
Q41-1	B	散秩大臣	a	覺羅萬復		經筵講官		嵩貴	e3
Q42-1	B	散秩大臣	a	隆興		內閣學士		永	c3
Q49-1	X	內大臣	a	西明		侍讀學士		阿肅	e4
Q51-1	X	工部侍郎		蘇凌阿	b6	內閣學士		瑞寶	e5

- b1. “書山”: 滿洲 內閣學士(職967).
- b2. “鍾音”: 滿洲 內閣學士(職967).
- b3. “介福”: 滿洲 禮部侍郎(職411).
- b4. “吳達善”: 滿洲 內閣學士(職970).
- b5. “富德”: 滿洲 內閣學士(職977).
- b6. “蘇凌阿”: 滿洲 工部侍郎(職436).
- c1. “岱”: 滿洲 內閣學士 岱奇(職956).
- c2. “嵩”: 滿洲 內閣學士 嵩壽(職968).
- c3. “永”: 滿洲 內閣學士 永信(職993).
- e1. “吳奉”: 滿洲 內閣學士 (覺羅)吳拜(職956)의 다른 轉寫.
- e2. “世臣”: “世貴”의 誤記,⁷⁷⁾ 世貴는 滿洲 內閣學士(職978).
- e3. “嵩貴”: 滿洲 內閣學士(職992).
- e4. “阿肅”: 正白旗 滿洲(職3183).
- e5. “瑞寶”: “瑞保”의 다른 轉寫,⁷⁸⁾ 滿洲 內閣學士(職1000).

77) 「禮部知會遣官冊封咨」, □□同文彙考□□ 原編 卷3, 17a쪽.

78) 「馳驛遣官上諭」, □□同文彙考□□ 原編 卷6, 42a쪽.

<표 9> 嘉慶 연간~道光 중기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J04-1	B	散秩大臣	a	張承勳		內閣學士		恒傑	b-1012
J04-2	B	散秩大臣	a	田國榮		內閣學士		英和	b-1012
J05-1	B	散秩大臣	a	明俊		內閣學士		納清保	b-1013
J06-1	B	散秩大臣	a	松齡		內閣學士		吉綸	b-1014
J08-1	B	散秩大臣	a	成德		內閣學士		明志	b-1016
J10-1	B	散秩大臣	a	瑞齡		內閣學士		德文	b-1018
J17-1	B	散秩大臣	a	孟住		內閣學士		廉善	b-1025
J25-1	B	散秩大臣	a	瑞齡		內閣學士		松福	b-1032
D01-1	B	散秩大臣	a	花沙布		內閣學士		恒齡	b-1033
D10-1	B	散秩大臣	a	額勒渾		內閣學士		裕誠	b-1042
D11-1	A	散秩大臣	a	慶敏		散秩大臣	a	文輝	
D13-1	X	散秩大臣	a	盛桂		理藩院侍郎	a	賽尙阿	
D15-1	B	散秩大臣	a	慶興		內閣學士		倭什訥	b-1047
D17-1	B	散秩大臣	a	倭什訥		內閣學士		明訓	b-1049

<표 10> 道光 후기~光緒 연간의 칙사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D24-1	X	吏部侍郎		柏俊	b-485	副都統	a	恒興	
D25-1	X	戶部侍郎		花沙納	b-486	副都統	a	德順	
D29-1	X	兵部侍郎		瑞常	b-489	內閣學士		和色本	b-1061
D30-1	X	刑部侍郎		全慶	b-489	副都統	a	德興	
X02-1	X	吏部侍郎		全慶	b-491	副都統	a	隆慶	
X08-1	X	工部侍郎		景康	b-496	副都統	a	廣林	
X11-1	X	盛京 戶部侍郎	a	倭仁		副都統	a	穆隆阿	
T03-1	X	戶部侍郎		阜保	b-501	副都統	a	文謙	
T05-1	X	侍郎		魁齡	e1	散秩大臣	a	希元	

구분	정례	上使				副使			
		관직	관정	이름	관정	관직	관정	이름	관정
G01-1	X	刑部侍郎		銘安	e2	散秩大臣	a	立瑞	
G01-2	B	散秩大臣	a	吉和		內閣學士		烏拉喜崇阿	b-1086
G04-1	X	刑部侍郎		繼格	b-509	副都統	a	恩麟	
G07-1	X	戶部侍郎		額勒和布	e3	刑部侍郎		錫珍	b-511

e1. “魁齡”: 理藩院右侍郎(職859).

e2. “銘安”: 盛京刑部侍郎(職864).

e3. “額勒和布”: 鑲藍旗 滿洲(職3279).

※ “盛京戶部侍郎”(X11-1)은 滿缺인 盛京五部侍郎 가운데 하나이다.⁷⁹⁾

<표 11> 三使 이하의 칙사 (順治 초~康熙 초)

구분	칙사
S01-3	三使 鄭命壽
S02-2	三使 啓心郎 鰲黑, 四使 鄭命壽
S02-3	三使 戶部主事 谷兒馬紅 卽 鄭命壽
S04-1	三使 戶部主事 谷
S04-2	三使 蝦庫, 四使 鄭命壽
S05-1	三使 戶部主事 谷, 四使 蝦布
S05-2	三使 蝦尼滿, 四使 戶部愛十喇 谷兒馬紅
S07-1	三使 蝦螭, 四使 學士 青, 五使 戶部愛什喇 谷
S07-2	三使 察
S07-3	三使 介
S08-2	三使 內院阿思哈 易, 四使 戶部副理官 谷
S08-4	三使 都察院副都御史 訥, 四使 戶部理事官 孤
S09-1	三使 蝦塗
S09-2	三使 理事官 谷兒馬紅
S10-1	三使 蝦郎

79) □□清史稿□□ 卷114, 3294

구분	직 사
S11-1	三使 內院學士 千, 四使 方
S11-2	三使 吏部 啓心郎 坑
S11-3	三使 柯
S12-1	三使 學士 絶庫納
S13-1	三使 一等蝦 交羅葉, 四使 一等蝦 阿, 五使 副理官 韓巨源
S13-2	三使 一等蝦 偏
S14-1	三使 都察院 左參政 能吐, 四使 吏部侍郎 千代
S14-2	三使 內院學士 白
S14-3	三使 頭等蝦 巴
S15-1	三使 太常寺理事官 沙
S16-1	提督 李一善
K01-1	提督加一級 李一善
K02-2	提督 李一善
K05-1	提督加一級 李一善
K09-1	提督加二級 李一善
K14-1	三使 三等待衛 應阿達
K20-2	三使 二等待衛 拜

※ 順治 연간에 빈출하는 鄭命壽는 <표 1> 아래의 설명에서 언급한 인물로, ‘S02-3’에서 보듯이 “谷兒馬紅”이라는 만주 이름은 곧 鄭命壽를 가리킨다. 鄭命壽가 ‘S09-2’의 “戶部主事”(=“戶部愛什喇”)에서 “戶部副理(事)官”(S08-2)을 거쳐 “理事官”(S09-2)까지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S04-1’ 등에 보이는 “谷”과 ‘S08-4’의 “孤”는 모두 鄭命壽를 가리킨다. ‘S13-1’에 등장하는 “韓巨源”과 ‘S16-1’ 이하에서 다섯 차례나 등장하는 “李一善”은 둘 다 鄭命壽와 마찬가지로 조선 출신의 인물로 漢人 출신이 아니었다.⁸⁰⁾ 한편 李一善의 관직인 “提督”은 禮部의 會同四譯館 소속 관직이다.⁸¹⁾ 鄭命壽 등을 제외하고 <표 11>에서 “a”나 “a-”로 판정할 수 없는 경우는, ‘S07-1’의 “學士 靑”, ‘S07-2’의 “察”, ‘S07-3’의 “介”, ‘S08-4’의 “都察院副都御史 吶”, ‘S11-1’의 “內院學士 千”과 “方”, ‘S11-1’의 “柯”, ‘S12-1’의 “學士 絶庫納”, ‘S14-1’의 “都察院 左參政 能吐”와 “吏部侍郎 千代”, ‘S14-2’의 “內院學士 白” 등 모두 11명에 이른다. 관련 사료를 종합해 보면, 이 가운데 ‘S08-4’의 “都察院副都御史 吶”

80) 韓巨源과 李一善이 조선 출신이라는 사실은, □□朝鮮王朝實錄□□ 仁祖 25년 10월 14일 條, □□朝鮮王朝實錄□□ 顯宗 10년 7월 23일 條를 참조.

81) □□淸史稿□□ 卷114, 3283-3284쪽.

은 納都戶,⁸²⁾ ‘S11-1’의 “內院學士 千”과 ‘S14-1’의 “吏部侍郎 千代”는 禪代,⁸³⁾ ‘S12-1’의 “學士 絶庫納”은 折庫納,⁸⁴⁾ ‘S14-1’의 “都察院 左參政 能吐”는 能圖,⁸⁵⁾ ‘S14-2’의 “內院學士 白”은 白色純⁸⁶⁾ 등을 가리키며 모두 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나머지 ‘S07-1’의 “學士 靑”, ‘S07-2’의 “察”, ‘S07-3’의 “介”, ‘S11-1’의 “方”, ‘S11-1’의 “柯” 등 5명 가운데 “方”과 “柯”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름으로 보건대 漢人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82) □□職官年表□□, 340쪽.

83) □□職官年表□□, 890쪽, 345쪽; □□順治實錄□□ 卷107, 順治 14年 2月 辛卯, 841쪽.

84) 「遣官詳確擬議勅」, □□同文集考□□ 原編 卷49, 30b-31a쪽; □□職官年表□□, 891쪽.

85) □□順治實錄□□ 卷107, 順治 14年 2月 辛卯, 841쪽; □□職官年表□□, 345쪽.

86) □□職官年表□□, 893쪽.

參考文獻

1. 1次 資料

- 同文彙考□□, 國史編纂委員會, 1978.
-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69.
- (滿漢合璧)清內府一統輿地秘圖康熙□□(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大 4709 53)
- 清史稿□□, 北京: 中華書局, 1977.
- 清實錄□□, 北京: 中華書局, 1985.
- 太宗實錄□□→□□清實錄: 太宗文皇帝實錄□□
- 順治實錄□□→□□清實錄: 世祖章皇帝實錄□□
- 康熙實錄□□→□□清實錄: 聖祖仁皇帝實錄□□
- 乾隆實錄□□→□□清實錄: 高宗純皇帝實錄□□
- 嘉慶實錄□□→□□清實錄: 仁宗睿皇帝實錄□□
- 道光實錄□□→□□清實錄: 宣宗成皇帝實錄□□
- 清廷三大實測全圖: 康熙皇輿全覽圖□□, 北京: 外文出版社
- 清朝文獻通考□□,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0.
- 欽定八旗通志□□,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2.
- 康熙 □□大清會典□□(近代中國史料叢刊 三編 第72輯), 臺北: 文海出版社, 1992.
- 乾隆 □□欽定大清會典□□(文淵閣四庫全書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 乾隆 □□欽定大清會典則例□□(四庫全書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 嘉慶 □□欽定大清會典□□(近代中國史料叢刊 三編 第64輯), 臺北: 文海出版社, 1992
- 嘉慶 □□欽定大清會典事例□□(近代中國史料叢刊 三編 第65-70輯), 臺北: 文海出版社, 1991-1992.
- 光緒 □□欽定大清會典□□(續修四庫全書 794),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1999.
- 紀昀 等, □□歷代職官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昭槤, □□嘯亭雜錄□□, 北京: 中華書局, 1980.

王士禛, □□池北偶談□□, 北京: 中華書局, 1982.

殷夢霞·于浩 選編, □□使朝鮮錄□□,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2. 2次 資料

고구려연구재단 편(2004),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중세)□□, 고구려연구재단.
구범진(2004), 「19세기 전반 淸人の 朝鮮使行: 柏蔭(1844년)과 花沙納(1845년)의
경우」, □□史林□□ 제22호, 119-146.

김한규(2000), 「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역사비평□□ 2000년 봄
호, 282-298.

모테기 도시오(2004), 「국민국가 건설과 내국 식민지: 중국 변강(邊疆)의 ‘해방」,
임지현 등,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휴머니스트, 137-164.

俞春根(1994), 「淸 冊封使 花沙納의 朝鮮 見聞」, □□嶺東文化□□ 5, 159-170.

全海宗(1970-1), 「韓中 朝貢關係 概觀」, □□韓中關係史研究□□, 서울: 一潮閣, 26-58.

全海宗(1970-2), 「淸代 韓中朝貢關係考」, □□韓中關係史研究□□, 서울: 一潮閣, 59-112.

한명기(2003), 「丙子胡亂 패전의 정치적 과장」, □□東方學志□□ 119, 53-93.

한명기(2005),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북방사논총□□ 8, 247-283.

한명기(2006),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질서」,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
아의 국제질서□□, 서울: 일조각, 224-258.

홍성구(2005), 「18세기 중국의 조선인식: 阿克敦의 朝鮮出使와 「東游集」·□□奉使
圖□□를 통해 본 朝淸關係, 그리고 그 시대적 특징」, 박원호 등, □□15~19세기 중
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79-129.

Crossley, Pamela K.(2002), “The Conquest Elite of the Ch’ing Empire,”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0-359.

Dennerline, Jerry(2002), “The Shun-chih Reig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Cambridge University Press, 73-119.

Elliot, Mark C.(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 Elliot, Mark C.(2006), “Ethnicity in the Qing Eight Banners,” Pamela K. Crossley, et. al, eds., *Empire at the Margins: Culture, Ethnicity, and Frontier in Early Moder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7-57.
- Fairbank, John K. ed.(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ncall, Mark(1968), “The Ch'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63-89.
- Mancall, Mark(1984), *China at the Center: 300 Years of Foreign Policy*, New York: The Free Press.
- Rawski, Evelyn S.(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hoads, Edward J. M.(2000), *Manchus &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Spence, Jonathan(2002), “The K'ang-hsi Reig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0-182.
- 高艷林(2004), 「明朝與朝鮮王朝之間的使臣往來」, The Final Research Results Supported by the KFAQ International Scholar Exchange Fellowship Program.
- 商鴻達 等(1990), □□清史滿語辭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孫喆(2003), □□康雍乾時期輿圖繪制與疆域形成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楊海英(2001), 「清初朝鮮通事考: 以古爾馬渾(鄭命壽)爲中心」, □□清史論叢□□ 2001年號, 88-106.
- 劉小萌(2001),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 劉爲(2002), □□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 劉子揚(1994), □□清代地方官制考□□, 北京: 紫禁城出版社.
- 李鵬年 等(1989), □□清代中央國家機關概述□□, 北京: 紫禁城出版社.
- 張杰 等(2005), □□清代東北邊疆的滿族(1644-1840)□□,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 張存武(1987),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48 인문논총 제59집 (2008)

錢實甫 編(1980), □□清代職官年表□□, 北京: 中華書局, 1980.

鄭天挺, □□清史探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山本達郎 編(1975),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平野聰(2007), □□大清帝國と中華の混迷□□, 東京: 講談社.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

ABSTRACT

A Study on the Personnel Appointments
of Qing Imperial Envoys to Korea:
Reconsidering Korea's Position in the World
Order under Qing Hegemony

Koo, Bumjin

Since Manchu army broke through the Shanhai pass 山海關 and the Qing court moved its capital to Beijing, hundreds of Qing officials, as imperial envoys with either political or ritual missions, visited Seoul, Korea. In this paper, it has been revealed that Qing emperors selected their envoys to Korea exclusively from bannermen 旗人 officials of higher ranks, or rank 3 and above. In other words, Han Chinese 漢人 officials were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excluded from the diplomatic missions to Korea. In stark contrast, Qing imperial envoys to Liuqiu 琉球 and Vietnam 安南/越南 were chosen from officials of lower ranks, or rank 5 and below, and Qing emperors did not care whether they were bannermen or Han Chinese.

According to Mark Mancall, Qing tributary states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or “the southeastern crescent” group and “the northwestern crescent” one. The countries of sedentary agricultural economy belonged to the former, while those of nomadic economy to the latter. In this dichotomy, Korea is considered as a member of the first group along with

Liuqiu and Vietnam.

Having discove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ppointment pool of Qing imperial envoys to Korea and that of Liuqiu and Vietnam, I think it necessary to reconsider Korea's membership in "the southeastern crescent" group and to give a second thought to the Qing view of the world as has been advocated by Mancall. Korea had much in common with the northwestern societies, such as Mongol tribes. Korea, along with the nomadic societies in Manchuria and Inner Mongolia, accepted Qing hegemony and joined the Qing tribute system by Qing military force *before* Manchu conquest of Ming China, while Liuqiu and Vietnam, former Ming tributary countries, came to be included, not by force but in their volition, in the list of Qing tributary states, as a corollary of Manchu conquest of Ming China. Diplomatic mission to Korea was not regarded as business of Han Chinese but that of bannermen, as was the case with the Qing administration of Mongol nomadic tribes, while Han Chinese official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s to Liuqiu and Vietnam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them.

Taking into account these facts, I argue the organizing principle that governed the Qing tribute system was the time when the society in question was incorporated into the Qing hegemonic world order, not the ecological system where it belonged, on which Mancall put primary importance.